목 포 시

시 보

낭만항구 목포
ROMANTIC PORT MOKPO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23호 2025. 12. 29. (월)

조례 · 규칙

○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 19
○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48
○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51
○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55
○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58
○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63
○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71
○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89
○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103
○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106
○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 122
○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31
○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39
○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142
○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44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48
○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155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57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61
○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5
○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 조례 169

○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70
○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75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77
○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5
○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7
○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26
○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228

고시 · 공고

○ 202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3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234
○ 「대성초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46

회람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79 호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4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 이란 목포시와 그 소속기관 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목포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4.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앞의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은(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은”으로, “학계, 법조계,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공정성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되 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처리에 관한사항”을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의견표명에 관한사항”을 각각 “의견표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평가에 관한사항”을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에 관한사항”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홍보에 관한사항”을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협력에 관한사항”을 “협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개인?법”을 “개인ㆍ법”으로, “지원에 관한사항”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여하지 아니한다”를 “그 고충민원을 관계부서 등에 이송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부서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판 등”을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에”로, “의하여 구제”를 “따른 불복구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

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이 있어야”를 “자격을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급”을 “4급”으로, “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지낸 자”를 “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4년으로 하되,”로, “있다”를 “없다”로 한다.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제8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미리”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로, “위원의 순으로”를 “위원이”로 한다.

제9조 중 “해촉 하여야”를 “해촉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 단?실?과?소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3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운영상황의 공표 등)”을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인사상 우대 등)”을 “(인사상 우대)”로 하고, 같은 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인사상 우대)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면책) 공무원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이행한 경우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중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공무상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한 위원과 민원상담 전문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시장은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로, “수당”을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른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 이란 목포시와 그 소속기관 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목포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을 말한다. 4.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	제4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설치) 목포시장(이하 “시

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목포시의 의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	<삭 제>
제5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이하 “위원”이라 한다) 제7조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학계, 법조계,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공정성 있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되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은 ---------- 시의회----------.
제6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제6조(위원회의 업무) ① ----------

한다	
1. 시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1. ----------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관한사항	2. ----------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관한사항	3. ----------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4. ----------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사항	5. ----------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6. ----------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사항	7. ----------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	8. ---------- 개인·법---------- 지원
9.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의	<삭 제>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에 관한사항	
10. (생 략)	9.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그 고충민원을 관계부서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서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2.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 따른 불복구제 ----------
4. 감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도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이미 처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리된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신 설>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신 설>	7. 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 ①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 ① ---------- 자격을 갖추어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지방의 회의원을 지낸 자	3. 4급 ----------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② ---------- 4년으로 하되,

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없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 ① (생 략)	제8조(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 위원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 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 해촉하여야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 단?실?과?소와 독립하여 직	제11조(사무기구) ① ---------- 지원하기 위하여 ----------

무를 수행하는 사무기구를 둔다. <단서 신설>	----------.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3장 보 칙	<삭 제>
제13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신설>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삭 제>

권고 및 의견 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회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인사상 우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 평정을 할 때에는 우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인사상 우대)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① 위원회는 민원업무에 관하여 시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가를 민원상담전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전문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면책) 공무원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이행한 경우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활동비의 지급 등)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공무상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한 위원과 민원상담 전문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7조(활동비의 지급 등) 시장은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 회의 참석 수당----------.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규칙) --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80 호

목포시 여론조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시의 시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행정 등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2.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3. 지역사회 내 주요 쟁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조사(ARS)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
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 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내용

제7조(여론조사 의뢰)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 공개) ①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경우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3.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응답률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81 호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조금이”를 “지방보조금이”로, “보조금의”를 “지방보조금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목포시 보조금관리 조례」와「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로, “자금”을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금지원”을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이”를 “지방보조금이”로, “공사현장”을 “공사 현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지원”을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을 “보조사업자 및 보조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 처분의 제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제1항 중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및 운영 표지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지원”을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지방보조금액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공사표지판의 설치)”를 “(공사 표지판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로,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을 “공사 표지판을 공사 현장”으로, “표기하여야”를 “표기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설표지판의 설치)”를 “(시설 표지판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시설표지판”을 각각 “시설 표지판”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시설상징물”을 “시설 상징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시설표지판”을 “시설 표지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운영표지판의 설치)”를 “(운영 표지판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운영표지판”을 “운영 표지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을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금지원”을 각각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을 “운영 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지원”을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비용부담)”을 “(비용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 비용”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리감독 및 평가)”를 “(관리 감독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로, “보조금을”을 “지방보조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목포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보조금이 ---------- 지방보조금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목포시 보조금관리 조례」와「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목포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제2조(정의) ----------. 1. ---------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목포시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보조금------. 2. ---------- 지방보조금 지원 ---------- 지방보조금이 ----------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공사현장----------.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목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지방보조금----------. 다만, 다음 각호에서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신 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신 설>	2. 재산 처분의 제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방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자 및 보조 금액----------.
<신 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금액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및 운영 표지판--. ② 지방보조금 지원 ---------- 기재해야 ------. 1.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지방보조금액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 공사 표지판을 공사현장---------- 표기해야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 시설 표지판----------.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시설 표지판---------- 시설 상징물----------.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 지방보조금---------- 시설 표지판----------.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표지판의 설치) ---------- 지방보조금---------- 운영 표지판----------.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목포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 지원 ----------. ---- 지방보조금 지원 ----------.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② 운영 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③ 지방보조금 지원 ----------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9조(비용 부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 비용----------.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 지방보조금을 ----------.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82 호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다.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제5조제2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전라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나. 시비 부담액 확보방안

제5조제5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모사업의 정책 적합성 및 필요성

2. 장기 재정 부담 및 위험요인 분석

3.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검토

4. 기타 시의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
1. 공모사업의 적법성	1. ----------
<신 설>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신 설>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신 설>	다.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2. 사업 타당성	2. ---------
<신 설>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전라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신 설>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여부
<신 설>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3. 주요정책관련 주민의견 청취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 등 부서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나. 시비 부담액 확보방안
5. 사업효과	5. ------
<신 설>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 설>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신 설>	제5조의2(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공모사업의 정책 적합성 및 필요성 2. 장기 재정 부담 및 위험요인 분석 3.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검토 4. 기타 시의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83 호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단서를 추가한다.

다만,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과제 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해촉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학술용역과제 사전검토) ① 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학계·연구원·부서 등에서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과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학술용역 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용역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활용
5. 그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학술용역 결과 관리 및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학술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과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학술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 학술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는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술용역 유사·중복 검토결과서

<table>
<tr><td>용역명</td><td colspan="4"></td></tr>
<tr><td>부서/
과제담당관</td><td colspan="2"></td><td>담당공무원</td><td></td></tr>
<tr><td>검토일자</td><td colspan="4"></td></tr>
<tr><td>용역 목적</td><td colspan="4"></td></tr>
<tr><td>용역
주요내용</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검토 개요</td><td>검토 대상
및 범위</td><td colspan="3"></td></tr>
<tr><td>검토 자료
수집 경로</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검토 결과</td><td colspan="4">유사·중복 용역 여부 : [ ] 있음 [ ] 없음
※ 유사·중복되는 기존 학술용역 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필요</td></tr>
<tr><td>검토 의견</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차별성
검토
※ 유사·중복
선행 용역
있을시</td><td rowspan="2">관련 선행
용역</td><td>과제명
(시행 연도)</td><td>연구자</td><td>목적, 방법, 주요 내용 등</td></tr>
<tr><td></td><td></td><td></td></tr>
<tr><td>선행
용역과의
차별성</td><td colspan="3"></td></tr>
<tr><td>새로운
학술용역
필요성</td><td colspan="3"></td></tr>
<tr><td>검토자</td><td colspan="4">과제담당관(소속) : ○○○ (서 명)</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학술용역 평가서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 목표의 달성도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 추진 방식의 적절성 (정책 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 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예산 적정 사용 및 계획 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 과제담당관(소속) : ㅇㅇㅇ (서 명) ◦ 외부전문가(소속) : ㅇㅇㅇ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용역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용역 기간	~ (개월)	용역비	(단위: 천 원)

용역 목적	
용역 주요 내용	
활용 목적	
활용 방안	
향후 추진계획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과제 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해촉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용역결과 관리) ① 용역 업무(학술용역) 관련 주관 실과소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용역 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역 주관부서장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학술용역과제 사전검토) ① 용역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학계·연구원·부서 등에서 기연구된 실적·자료 등과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신 설>	제11조의2(학술용역 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

	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용역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활용 5. 그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3 <신 설>	제11조의3(학술용역 결과 관리 및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학술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학술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학술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 학술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84 호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85 호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1.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지원

3. 교육 전문강사 양성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86 호

목포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

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 인적안전망”이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사업계획
3.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또는 물품

제8조(역량강화)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

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87 호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사업장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익금 사용)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과

운영 유지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수익금은 직원의 복지증진과 시설 운영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장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4조(사업장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사업장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수익금 사용) ①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 및 복리후생,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 외에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수익금 사용)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과 운영 유지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수익금은 직원의 복지증진과 시설 운영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전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전 승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0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88 호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기준”을 “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을 “법 제2조제3호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을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를 “장애인복지위원회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28조의2에 따르며,”로 하며, 같

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고용 지원)”을 “(고용관리 기술 지원)”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장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장애인 고용사업장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업체”를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체와”를 “사업장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법 제2조제2호----------.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 법 제2조제3호를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공기업, 시 출자·출연기관, 시 위탁 기관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본 조례의 100분의 5라 함은 20인 기준 1인을 말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며, ----------. ② ---------- 법 제28조의2에 따르며, ----------. <단서 삭제>
제9조(고용 지원) (생 략)	제9조(고용관리 기술 지원) (현행과 같음)
제10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 공기업, 시 출자·출연기관, 시 위탁 기관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기업 등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장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 등을 위

<신 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장애인 고용사업장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 사업장----------. ② ---------- 사업장과 ----------.
<신 설>	제14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89 호

목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목포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지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별·연령·가구 형태별 현황 및 격차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의 사회보

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시 성별·연령·가구형태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목포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

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목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게「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개인정보 보호법」및「사회보장기본법」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90 호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제1항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하”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2호부터 제7호, 제10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8조”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를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친권행사”를 “친권행사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9.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명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로, “아동분야에”를 “아동 분야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장과”로, “각각 그 직에 재임하는”

을 “그 직에 재직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우”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망, 질병, 회의의 장기 불참”을 “위원의 사망, 질병”으로, “판단된 경우”를 “판단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때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제2항 중 “과반수의 찬성”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아동위원

제14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

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자

③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할 때

제1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아동위원의 역할 등) ① 아동위원은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해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아동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
<신 설>	제1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후단 신설>	②----------. 이 경우 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2호부터 제7호, 제10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1. 법 제8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3. ---------- 따른 ---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 친권행사의 ---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9.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생 략)	10.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1명 이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관서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아동 분야에 관한 ----------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

		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 설>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과 -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그 직에 재직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1. ---------- 때
2. 사망, 질병, 회의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 판단될 때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신 설>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과반수의 찬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생 략)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장 아동위원
<신 설>	제14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

	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자 ③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할 때
<신 설>	제1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아동위원의 역할 등) ① 아동위원은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해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행하며 전담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아동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91 호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 민간부분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선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 의원
2.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92 호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포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

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 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5.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목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방안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

여 목포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3. 목포시의회 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

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양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의 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19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공직 참여)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 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상위직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5.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활성화
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제25조(성차별 금지 등)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는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목포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④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목포시 개별 조례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위촉이나 업무위탁 또는 수행자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 중에서 소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법 제39조에 의한 여성친화도시로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 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31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연찬회
2. 여성친화 아카데미
3. 여성의 역량강화교육
4. 취약계층 지원사업
5. 시민건강 증진사업
6. 여성단체간 화합·교류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7. 양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34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참여확대,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포

시성평등기금”을“목포시 양성평등기금 (이하 “기금” 이라한다)”으로 전환하여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기금의조성은 2016년까지 20억원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이자발생액과 그 밖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권보호, 권익증진 사업

3.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피해 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4.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기금운용관인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3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담당책임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목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지방재정법」,「지방 재정법 시행령」및「목포시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4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41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93 호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 등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94 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30명”을 “20명”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위촉위원의 정수는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 이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총무 1명과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목포시 위원회 중 3개를 초과하여 겸임한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제9조(기획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과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축제별 기획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축제추진위원회 및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제3조(구성) ① ----------20명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95 호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에서 55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60세로 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제9조 (위촉연령) ① ----------. 다만,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96 호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개”를 “15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 15개 ----------.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97 호

목포시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 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목포 청년쉼터 다락(이하 “다락”이라 한다)”은 청년과 관련하여 청년발전, 청년 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재산을 목포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주자”란 다락 내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다락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락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다락 운영 및 유지·보수 등

③ 시장은 다락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다락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들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2.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제공

3.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제공

4. 예비·초기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입주 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락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② 신청하는 자가 경합할 때는 제1항제1호를 우선한다.

③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용료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대여) ① 물품 대여는 제5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며 물품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설 내 물품 및 기타 전산장비 등은 사용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물품 대여 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변상조치) 사용기간 중에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물품 등을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 시장은 청년정책 인식 확산과 다락의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자 선정) 1층 창업공간의 입주자 선정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입주자 선정의 취소)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입주자의 의무)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시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시건 및 건물 전반 청소·관리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최 협조

제17조(입주자 지원) ① 입주자의 입주공간 임대료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항 관련)

명 칭	위 치
목포 청년쉼터 다락	목포시 유달로 97번길 3(온금동 일원)

시설 구분(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운영방법	비 고
1층	창업공간	사용수익허가(공개모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준용
	야외공간	시 직영	대관 신청 가능
2층	소통공간	시 직영	
	회 의 실	시 직영	

[별표 2]

사용료 기준(제5조 관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h>기 준</th><th>사용료</th><th>비고</th></tr>
<tr><td rowspan="3">시 설 대 관</td><td>1 층</td><td>야 외 공 간</td><td rowspan="3">2시간(기본)</td><td rowspan="3">10,000원</td><td rowspan="3"></td></tr>
<tr><td rowspan="2">2 층</td><td>소 통 공 간</td></tr>
<tr><td>회 의 실</td></tr>
<tr><td>물 품 대 여</td><td colspan="2">물 품 대 여
(전 산 장 비 포 함)</td><td>사용시간 내</td><td>무료</td><td></td></tr>
</table>

※ 초과 사용 시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가산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유 형	반 환 기 준
사용료	사용일 6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나머지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 시	미 반환
공 통	제10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별지 제1호 서식]

목포 청년쉼터 다락 사용허가 신청서

※ 작성 시 뒷면 유의사항 참고 바랍니다

신 청 인	성 명 또는 대표자	(□남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 용 목 적				
사 용 공 간	□ 1층 야외공간 □ 2층 소통공간 □ 2층 회의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인원 명	
기 타				

「목포 청년쉼터 다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체명)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유의사항

1. 대관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기재사항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목적은 반드시 작성바랍니다.(예 : 청년정책 회의, 청년 단체 소모임 등)
3, 사용하실 공간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중복 사용 가능하나, 사용 신청이 기 완료 된 경우 중복 사용 불가능)
4. 사용시간은 사용료 산출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 시간에는 준비 및 정리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5. 신청한 사용 시간을 초과하면 30분 미만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되며,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이 가산됩니다.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98 호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계획과 추진방안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 목포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전라남도 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제19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재난·안전 대응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목포경찰서·목포해양경찰서·목포소방서 업무 담당 부서장
나.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특수관계(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수당은「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8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제19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4. 화학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시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목포경찰관서·목포해양경찰관서·목포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화학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3999 호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57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6. 자기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제59조의4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이나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할 때

6. 1년 단위(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68조제4항 중 “제57조 제5항 및 제6항”을 “제5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5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서 신설>	제57조(구성) ① ----------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이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삭 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제5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기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의4(위원의 해촉)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이나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할 때
<신 설>	6. 1년 단위(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68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6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제5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④ ---------- 제57조제6항----------.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00 호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에 대하여 시청 및 보건소 누리집,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학교·사법기

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01 호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목포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2.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3.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
4.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빗물받이에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불법덮개 제

거,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불법덮개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02 호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위약금(20퍼센트)”를 “위약금(1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시 위약금(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1. ~ 3. (생 략) 4. ----------위약금(10퍼센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03 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위약금(20퍼센트)”를 “위약금(1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4 . ----------위약금(10퍼센트)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04 호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05 호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

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 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

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34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

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을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목포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성인지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디지털 성범죄, 위치정보 악용 등 성인지 기반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대응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

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06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374	1,374				
정무직계	1	1				
정무직	1	1				
일반직계	1,357	1,357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0	33	3	3	8	23
6급이하	1,276	1,276				
연구직계	13	13				
연구관	2	1			1	
연구사	11	11				
지도직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07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23조제19항 단서의 후단 중 “사용시”를 “모성보호시간 사용시”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 및 제22항을 각각 제22항 및 제2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항 및 제2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㉑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

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생략)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이 경우 시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⑦ ~ ⑨ 삭 제	
⑩ ~ ⑱ (생 략)	⑩ ~ ⑱ (현행과 같음)
⑲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⑲ ----------. ----------.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
⑳ (생 략)	⑳ (현행과 같음)
<신 설>	㉑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㉑·㉒ (생 략)	㉒·㉓ (현행 제21항 및 제22항과 같음)
<신 설>	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07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23조제19항 단서의 후단 중 “사용시”를 “모성보호시간 사용시”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 및 제22항을 각각 제22항 및 제2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항 및 제2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㉑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

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⑦ ~ ⑨ 삭 제 ⑩ ~ ⑱ (생 략) ⑲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⑳ (생 략)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이 경우 시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⑩ ~ ⑱ (현행과 같음) ⑲ ----------. ----------. ----------.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 ⑳ (현행과 같음) ㉑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㉑·㉒ (생 략)	㉒·㉓ (현행 제21항 및 제22항과 같음)
<신 설>	㉔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08 호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7. 목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

②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목포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6호) 중 “15호까지”를 “16호까지”로 한다.

16.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

⑤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의 경우,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신 설>	제25조(기부자 예우)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기부자 예우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7. 목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09 호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10 호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은 조립식 구조로 옥상 및 지하에 설치하지 않는 1개층 이하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전라남도 업무대행 건축사로 등록된 자로 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별표4”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 략)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9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9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신 설>	4.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은 조립식 구조로 옥상 및 지하에 설치하지 않는 1개층 이하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 략)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시장이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 및 선정 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	전라남도 업무대행 건축사로 등록된 자로 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1. --- 10미터 ---------- 2. --- 10미터----------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4](개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조례 제23조 관련)

규 모 (연면적 합계)	소요시간(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3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4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6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7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5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0
30만제곱미터 이상	30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 적용(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산정식 : 엔지니어링대가(시간당)×소요시간×현장조사시 비율 = 대행수수료

예) 2014년 1월 1일 기준 시 334,901원/일(천원 미만 절사)

334,901원 ÷ 8시간 = 41,800원/시간

※ 검사대상 건축물 면적에 따른 수수료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Y = \left\{ Y1 - \frac{(X-X2)\times(Y1-Y2)}{(X1-X2)} \right\}$$

X:해당면적 X1:큰면적 X2:작은면적

Y:적용시간 Y1:작은면적시간 Y2:큰면적시간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조례 제 4011 호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제3호를 삭제하고, 제4, 5, 6호를 제3, 4, 5호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삭 제>
4. ~ 6. (생 략)	3. (현행 4호와 같음) 4. (현행 5호와 같음) 5. (현행 6호와 같음)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규칙 제 1897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374	741	35	80	194	32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57	730	35	80	188	324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0	33	3	3	8	23
	6급	276	166	6	15	42	47
	7급	354	218	14	23	45	54
	8급	344	164	10	24	49	97
	9급	302	141	1	14	43	103
연구직	계	13	7			6	
	연구관	2	1			1	
	연구사	11	6			5	
지도직	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직렬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1374	741	35	80	194	324
정무직		합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7	730	35	80	188	324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0	33	3	3	8	23
		행정	14	7	1			6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관	1				1	
	6급	소계	276	166	6	15	42	47
		행정	57	31	5		2	19
		세무	7	7				
		사회복지	10	5				5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환경	1				1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2	35			7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보건+식품위생	2			2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4	3			1	
	7급	소계	354	218	14	23	45	54
		행정	101	54	12		9	26
		세무	21	20			1	
		사회복지	46	26				20
		전산	4	2	1		1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27	10			17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6	6				
		보건	1			1		
		식품위생	1			1		
		간호	12			10		2
		환경	5	3			2	
		시설	31	29			2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전	16	15			1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8급	소계	344	164	10	24	49	97
		행정	91	45	6		13	27
		세무	7	5			2	
		사회복지	56	21				35
		사서	3	3				
		속기	2		2			
		전산	4	4				
		공업	19	4		1	1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6			6		
		간호	24			3		21
		환경	3	1			2	
		시설	26	19			7	
		방송통신	3	1	1		1	
		행정+사회복지	14	2				12
		행정+세무	6	6				
		행정+전산	2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4	4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7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4	1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5	2		3		
		운전	14	12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화공운영	1				1	
	9급	소계	302	141	1	14	43	103

		행정	77	36			2	39
		세무	4	4				
		전산	3	3				
		사회복지	50	8				42
		사서	1	1				
		공업	15	3			12	
		녹지	4	4				
		해양수산	2	2				
		보건	1			1		
		식품위생	1			1		
		환경	6	3			3	
		시설	18	17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4	3			1	
		행정+사회복지	28	6				22
		행정+전산	6	5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8	7			1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방송통신	3	2			1	
		사회복지+보건	5			5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식품위생	1			1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시설관리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7				7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환경+시설	1				1	
연구직		연구직 합계	13	7			6	
	연구관	연구관 합계	2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1	6			5	
		학예연구사	9	5			4	
		환경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신.구조문 대비표(별표1)

현 행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374	737	35	80	194	328
정무직	계	1	1	0	0	0	0
	시장	1	1				
일반직	계	1356	726	35	80	187	328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0	33	3	3	8	23
	6급	274	165	6	15	41	47
	7급	355	218	18	21	43	55
	8급	341	161	6	26	49	99
	9급	305	141	1	14	45	104
연구직	계	14	7	0	0	7	0
	연구관	2	1			1	
	연구사	12	6			6	
지도직	계	3	3	0	0	0	0
	지도관	0					
	지도사	3	3				

개 정 안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374	741	35	80	194	324
정무직	계	1	1	0	0	0	0
	시장	1	1				
일반직	계	1357	730	35	80	188	324
	3급	1	1				
	4급	10	7	1	1	1	
	5급	70	33	3	3	8	23
	6급	276	166	6	15	42	47
	7급	354	218	14	23	45	54
	8급	344	164	10	24	49	97
	9급	302	141	1	14	43	103
연구직	계	13	7			6	
	연구관	2	1			1	
	연구사	11	6			5	
지도직	계	3	3				
	지도관						
	지도사	3	3				

신.구조문 대비표(별표2)

현 행

〔별표2〕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직렬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1374	737	35	80	194	328
정무직		합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6	726	35	80	187	328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0	33	3	3	8	23
		행정	14	7	1			6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개 정 안

〔별표2〕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직렬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1374	741	35	80	194	324
정무직		합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7	730	35	80	188	324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10	7	1	1	1	
		행정	2	2				
		기술	1			1		
		행정+기술	7	5	1		1	
	5급	소계	70	33	3	3	8	23
		행정	14	7	1			6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4	11			2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5	3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	1	1				

현 행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관	1				1	
	6급	소계	274	165	6	15	41	47
		행정	57	31	5		2	19
		세무	7	7				
		사회복지	9	4				5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3	36			7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연구관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관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관	1				1	
	6급	소계	276	166	6	15	42	47
		행정	57	31	5		2	19
		세무	7	7				
		사회복지	10	5				5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환경	1				1	
		시설	3	2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6	13				13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2	35			7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현 행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수의+환경+	1				1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시설+건축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4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0	8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2	9			3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보건+식품위생	2			2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2				2	

현 행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환경연구사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4	3			1	
	7급	소계	355	218	18	21	43	55
		행정	107	56	16		9	26
		세무	22	21			1	
		사회복지	47	26				21
		전산	4	2	1		1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25	10			15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6	6				
		보건	1			1		
		간호	11			9		2
		환경	5	3			2	
		시설	31	29			2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4	3			1	
	7급	소계	354	218	14	23	45	54
		행정	101	54	12		9	26
		세무	21	20			1	
		사회복지	46	26				20
		전산	4	2	1		1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27	10			17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6	6				
		보건	1			1		
		식품위생	1			1		
		간호	12			10		2
		환경	5	3			2	
		시설	31	29			2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5	4			1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1	1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보건+식품위생	4			4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운전	16	15			1	
		보건+간호	4			4					건축운영	1				1	
		의료기술+간호	1			1					전기운영	2				2	
		행정+공업+시설	2	2							기계운영	3				3	
		행정+농업+수의	1	1							열관리운영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8급	소계	344	164	10	24	49	97
		운전	16	15			1				행정	91	45	6		13	17
		건축운영	1				1				세무	7	5			2	
		전기운영	2				2				사회복지	56	21				35
		기계운영	3				3				사서	3	3				
		열관리운영	1				1				속기	2		2			
	8급	소계	341	161	6	26	49	99			전산	4	4				
		행정	90	46	2		13	29			공업	19	4		1	14	
		세무	8	6			2				농업	1	1				
		사회복지	57	21				36			녹지	3	3				
		사서	2	2							해양수산	3	3				
		속기	2		2						보건	4			4		
		전산	4	4													
		공업	19	4		1	14				의료기술	6			6		
		농업	1	1							간호	24			3		21
		녹지	3	3							환경	3	1			2	
		해양수산	3	3							시설	26	19			7	
		보건	4			4					방송통신	3	1	1		1	
		식품위생	1			1					행정+사회복지	14	2				12
		의료기술	6			6					행정+세무	6	6				
		간호	25			4		21			행정+전산	2	2				
		환경	3	1			2				행정+농업	1	1				
		시설	26	19			7				행정+공업	1	1				
		방송통신	3	1	1		1				행정+보건	4	4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환경	1	1				
		행정+세무	5	5							행정+시설	7	7				
		행정+전산	2	2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농업	1	1							행정+방송통신	2	2				
		행정+공업	1	1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4	4							사회복지+시설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4	2			2	
		행정+시설	7	7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2	2							보건+식품위생	2			2		
		전산+방송통신	1	1							보건+간호	4	1		3		
		사회복지+시설	1	1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공업+시설	1	1				

현 행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4	1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4	1		3		
		운전	14	12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화공운영	1				1	
	9급	소계	305	141	1	14	45	104
		행정	84	43			2	39
		세무	4	4				
		전산	3	3				
		사회복지	63	7				56
		사서	2	2				
		공업	17	3			14	
		녹지	4	4				
		해양수산	3	3				
		보건	3			3		
		식품위생	1			1		
		환경	6	3			3	
		시설	18	17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5	6				9
		행정+전산	6	5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9	8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1				1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5	2		3		
		운전	14	12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화공운영	1				1	
	9급	소계	302	141	1	14	43	103
		행정	77	36			2	39
		세무	4	4				
		전산	3	3				
		사회복지	50	8				42
		사서	1	1				
		공업	15	3			12	
		녹지	4	4				
		해양수산	2	2				
		보건	1			1		
		식품위생	1			1		
		환경	6	3			3	
		시설	18	17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4	3			1	
		행정+사회복지	28	6				22
		행정+전산	6	5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8	7			1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방송통신	3	2			1	
		사회복지+보건	5			5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식품위생	1			1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시설관리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현 행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사회복지+보건	3			3		
		공업+시설	2	2			1	
		보건+의료기술	3			3		
		보건+식품위생	1			1		
		방호	1	1				
		운전	19	9	1	3	6	
		시설관리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7				7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공업+환경+시설	1				1	
연구직		연구직 합계	14	7			7	
	연구관	연구관 합계	2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2	6			6	
		학예연구사	9	5			4	
		환경연구사	2				2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개 정 안

직종별	직급	기관별 /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기계운영	7				7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환경+시설	1				1	
연구직		연구직 합계	13	7			6	
	연구관	연구관 합계	2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연구사 합계	11	6			5	
		학예연구사	9	5			4	
		환경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직 합계	3	3				
	지도사	지도사 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규칙 제 1898 호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산정동·유달동·죽교동의 관할구역 현황을 별지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규칙안

- 산정동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6	2	양을로 91,101동 106~1407호(일신아파트) 양을로 91,103동 101~1502호(일신아파트)
	9	2	연산동 963-6 연산로124번길 10-10,16(제우빌라트) 원산로 138(우진하이빌A,B,C동).140,148-1
		3	연산동 983 연산로123번길 2,2-1,2-2 연산로124번길 12

- 유달동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유달동	11	2	보리마당로22번길 11-2,3,5~9, 13, 13-1~4, 16, 16-1,2, 18-1,2,4,5 보리마당로 24-3, 28-1 해안로127번길 16-1, 17-1, 18, 18-1~3 해안로163번안길 3-5, 17-1
	14	1	서산로17번길 15-2 보리마당로22번길 11-4, 16 보리마당로 28, 28-2, 4, 5, 7 해안로163번안길 19
		3	보리마당로 11, 14, 18 보리마당로22번길 2, 4, 4-1~6, 5-3, 6-2, 6-3 해안로 103-3 유달로 28 유달로28번길 1, 1-2, 2, 3, 5, 7, 7-1~2, 8, 11, 11-1~3, 13, 14, 18-2
	15	1	해안로 103, 103-4, 5 해안로105번길 1, 3, 5, 7-1~7, 9, 9-1~3, 11, 11-1~3 보리마당로22번길 6-4, 8, 8-1
	17	1	유달로 45-1~5,7,14,15 올뫼나루길 22
	18	3	유달로 45-10~11, 51-4 유달로53번길 3-2 올뫼나루길 5-3~5, 7, 9, 12
		4	다순구미로 16, 16-1~2, 19 다순구미로14번길 3, 3-1 보리마당로 4, 6, 10 올뫼나루길 12 해안로 71, 83, 95-2, 103-1 해안로57번길 28, 28-1

- 죽교동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죽교동	1	3	달성길91번길 8-1,2,3,4,5,6, 11 달성길105번길 14, 14-1,2 수문로101번길 17, 18-2,3,5, 20, 20-2,4,6,7, 22, 22-2 수문로111번길 22, 22-1
	4	1	죽교동 80-95 신죽길 31-1 죽선로 1, 3, 5-1
	7	1	죽교동 575-217 북항로 59-2, 61, 63, 63-3, 65, 65-1, 67, 71 북항로59번길 6, 6-1, 10
		2	죽교동 40-26 북항로 51, 51-1,2, 53, 53-1,2,3,4,5,6, 55-2,4,5, 57-1, 59 북항로59번길 3-1,2, 5-2,4 죽선로 6, 8
		3	죽교동 573-2 북항로 42, 44, 44-1,2, 죽교천로 2, 2-1, 3-1, 4, 4-1,2, 6, 7, 8, 8-2 청호로67번길 16-3,4, 20, 24, 24-1,2,4,7,8,10,11,13,15,16 청호로85번길 16, 18, 18-1,2,4,5, 24, 24-1
		4	죽교동 573-284 북항로 48, 48-1, 50-1, 52, 52-1,3,4, 54, 54-1,4 죽교천로 1, 5, 9-1,2,3,4, 10, 10-1, 11, 11-1, 13, 13-3,4,5 청호로85번길 17, 19-4,5, 20-1,2,3,4,6, 22, 22-1, 23
	8	1	죽교동 538-12,13,32,33,34,35,52,93,95,145 북항로149번길 4 해양대학로 227, 227-2, 229-1,2,3,6, 243-4,5,6,7,8 해양대학로251번길 11, 11-1,2,3,4,5,6,7,8
		4	죽교동 536-4,7,76,112 북항로 128-1, 130 해양대학로 223-1, 229, 241, 241-1,2, 243, 243-1,3, 253-1, 255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죽교동	9	1	대성동 212-75 죽교천로 12, 12-1,2,3,4, 14-1,2,3 청호로85번안길 3, 5, 6, 6-1,2, 9, 9-1, 11, 14, 14-1,2,3
		2	대성동 212-150 청호로85번길 5, 8, 8-1, 10, 12, 13, 14
		3	양을로 18-1,2, 20, 22, 22-2,3,4 죽교천로 18-1, 20, 20-1,4,5, 22, 22-1
		4	청호로 83 청호로85번안길 2, 2-1, 4, 4-1, 7
	10	1	죽교동 573-1,15,200 북항로 54-3,4,5,6,7,8,9,10, 56-1 북항로56번길 2-1,2,3,4,5,6, 4, 4-1, 6, 6-1,2,3,4,5,6,7,8,9,10, 10-1, 10-2
		2	죽교동 574-22, 42 북항로56번길 8-1 양을로 14 죽교천로 15-3,4,5,6, 17-1
		3	죽교동 79-9,10, 575-269, 575-21 북항로56번길 7, 7-1 양을로 12 죽교천로 19-2,3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죽교동	11	1	죽교동 574-22,30 양을로 3, 3-1, 5, 5-2, 5-3, 7-1, 11, 11-1, 13, 13-1,2 죽교천로 25, 25-1, 27, 29, 31, 31-1,2, 33, 33-1,2
		2	죽교동 574-63,65,66,208,210 북항로72번길 9, 9-1,2 양을로 1-6,7 양을로7번길 1, 3, 4, 4-1,2,3, 5-1,4, 8-1
		3	죽교동 574-109, 575-101, 582-113 북항로72번길 5-1,2 북항로74번길 6-1, 8-1,2, 14, 14-1,2 죽교천로 37-1, 39, 39-1, 43
		4	죽교동 574, 574-73, 582-36 북항로72번길 7, 7-1,2,3,4,6,7,9 양을로7번길 5, 5-2,3, 9, 9-1~10, 10 죽교천로 37
	12	1	북항로 68, 70, 70-1,2, 72 북항로72번길 2, 4, 4-1,2,3, 6, 8, 8-1, 10 북항로74번길 7-1, 9 북항로78번길 16 양을로 1, 1-2,3,4,5
		2	죽교동 582-92 북항로74번길 15, 15-1,3,4,5,6 북항로78번길 15, 15-1, 16-1, 17, 18, 20
		3	북항로 74, 74-1, 76, 76-1, 80, 82-1,2,3,5 북항로72번길 1, 1-1, 3 북항로74번길 1, 3, 3-1, 5 북항로78번길 2, 2-1, 4, 4-1,2, 6, 6-1,2,3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죽교동	13	2	북항로108번길 10, 10-1,2, 11, 12, 12-1, 14, 14-1,2 원산로 3-2
		3	죽교동 580-300,303 북항로 110, 110-2,3,4, 112, 112-1,2,3,8,9,10,11,12, 114-1, 116 북항로108번길 15-1, 18
		4	북항로 113, 116-1, 118, 120, 120-1,2, 122, 122-1,2,3,4, 124, 124-1, 126, 128 북항로108번길 19, 19-1, 20, 22, 22-1,2,3, 23, 24, 24-1, 25 원산로 6, 6-1, 8, 8-1,2,3, 10, 12
		5	북항로108번길 16 원산로 3-1 죽교천로 93, 103, 107, 107-1
	14	1	북항로81번길 14-14 죽선로 33, 33-2, 39, 39-1
		3	죽교동 22-25,28, 37-13,39,40,76, 42-30 북항로81번길 14-12,13,16, 16, 17, 18-1 죽교길11번길 11-1 죽선로 39-2, 43
	15	1	북항로 83, 85, 87-3, 89-3,4,5, 91-2 북항로59번길 26, 28, 30 죽선로 34, 38, 42-1
		2	북항로 89-1, 93, 95, 95-1,2,3, 97, 97-1, 99, 101 죽선로 42-2,3, 44, 44-1,2, 46, 46-1
	16	2	16통 2반 중복 기재로 삭제
	16	4	죽교동 516-6,61,87,116,206, 518 북항로121번길 17-2,14,18,25,26

신·구 대비표

• 산정동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6	2	연산동 963-6 연산로124번길 10-10,16(제우빌라트) 원산로 138(우진하이빌A,B,C동),140, 148-1	6	2	양을로 91,101동 106~1407호(일신아파트) 양을로 91,103동 101~1502호(일신아파트)
	9	2	연산동 963-6 산정로308 연산로124번길 10-10,16(제우빌라트) 원산로 138(우진하이빌A,B,C동).140,148-1	9	2	연산동 963-6 연산로124번길 10-10,16(제우빌라트) 원산로 138(우진하이빌A,B,C동).140,148-1
		3	연산동 983 연산로124번길 12		3	연산동 983 연산로123번길 2,2-1,2-2 연산로124번길 12

• 유달동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유달동	11	2	보리마당로22번길 6-3, 11-2, 3, 5~9, 13, 13-1~3, 16, 16-1,2, 18-1,2,4,5 보리마당로 24-3, 28-1 해안로127번길 16-1, 17-1, 18, 18-1~3 해안로163번안길 3-5, 17-1	11	2	보리마당로22번길 11-2, 3, 5~9, 13, 13-1~4, 16, 16-1,2, 18-1,2,4,5 보리마당로 24-3, 28-1 해안로127번길 16-1, 17-1, 18, 18-1~3 해안로163번안길 3-5, 17-1
	14	1	서산로17번길 15-2 보리마당로22번길 11-4, 13-4, 16 보리마당로 28, 28-2,4,5,7 해안로163번안길 19	14	1	서산로17번길 15-2 보리마당로22번길 11-4, 16 보리마당로 28, 28-2,4,5,7 해안로163번안길 19
		3	보리마당로 11, 14, 18 보리마당로22번길 2, 4, 4-1~6, 6-2 해안로 103-3 유달로 28 유달로28번길 11, 11-1~3, 13, 14, 18-2		3	보리마당로 11, 14, 18 보리마당로22번길 2, 4, 4-1~6, 5-3, 6-2, 6-3 해안로 103-3 유달로 28 유달로28번길 1, 1-2, 2, 3, 5, 7, 7-1~2, 8, 11, 11-1~3, 13, 14, 18-2

	15	1	해안로 103,103-4, 5 해안로105번길 1, 3, 5, 7-1~7, 9, 9-1~3, 11, 11-1~3 보리마당로22번길 5-3, 6-4, 8, 8-1	15	1	해안로 103, 103-4,5 해안로105번길 1, 3, 5, 7-1~7, 9, 9-1~3, 11, 11-1~3 보리마당로22번길 6-4, 8, 8-1
	17	1	유달로 45-1~5,7,14,15 올뫼나루길 22 유달로28번길 5, 7, 8	17	1	유달로 45-1~5,7,14,15 올뫼나루길 22
	18	3	유달로28번길 2, 5, 7, 8 유달로 45-10~11, 51-4 유달로53번길 3-2 올뫼나루길 5-3~5, 7, 9, 12	18	3	유달로 45-10~11, 51-4 유달로53번길 3-2 올뫼나루길 5-3~5, 7, 9, 12
		4	유달로28번길 2 유달로 28 다순구미로 16, 16-1~2, 19 다순구미로14번길 3, 3-1 보리마당로 4, 6, 10 올뫼나루길 12 해안로 71, 83, 95-2, 103-1 해안로57번길 28, 28-1		4	다순구미로 16, 16-1~2, 19 다순구미로14번길 3, 3-1 보리마당로 4, 6, 10 올뫼나루길 12 해안로 71, 83, 95-2, 103-1 해안로57번길 28, 28-1

- **죽교동**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죽교동	9	1	대성동 212-75 죽교천로 10, 10-1, 12, 12-1,2,3,4, 14-1,2,3 청호로85번길 16, 18, 18-1,2, 4,5, 19-5 청호로85번안길 3, 5, 6, 6-1, 2, 9, 9-1, 11, 14, 14-1,2,3	9	1	대성동 212-75 죽교천로 12, 12-1,2,3,4, 14-1,2,3 청호로85번안길 3, 5, 6, 6-1,2, 9, 9-1, 11, 14, 14-1,2,3
		2	대성동 212-150 청호로85번길 5, 8, 8-1, 10, 12, 13, 14 청호로85번안길 7		2	대성동 212-150 청호로85번길 5, 8, 8-1, 10, 12, 13, 14
		3	양을로 18-1,2, 20, 22, 22-2,3,4 죽교천로 18-1, 20, 20-1,4,5, 22, 22-1		3	양을로 18-1,2, 20, 22, 22-2,3,4 죽교천로 18-1, 20, 20-1,4,5, 22, 22-1

			청호로85번안길 2, 2-1, 3, 4			
		4	청호로 83		4	청호로 83 청호로85번안길 2, 2-1, 4, 4-1, 7
	10	1	죽교동 573-1,15,200 북항로 54-3,4,5,6,7,8,9,10, 56-1 북항로56번길 2-1,2,3,4,5,6, 4, 4-1, 6-1,2,3,4,5,6,7,8,9,10, 10-1	10	1	죽교동 573-1,15,200 북항로 54-3,4,5,6,7,8,9,10, 56-1 북항로56번길 2-1,2,3,4,5,6, 4, 4-1, 6, 6-1,2,3,4,5,6,7,8,9,10, 10-1, 10-2
		2	죽교동 574-42,57 북항로 74 북항로56번길 6, 6-1, 8-1, 10-1,2 북항로72번길 1 북항로78번길 1 양을로 14 양을로7번길 4-2, 9-1, 10 죽교천로 15-3,4, 17-1, 19-2, 25-1, 27, 29, 31, 31-1, 33, 33-2		2	죽교동 574-22, 42 북항로56번길 8-1 양을로 14 죽교천로 15-3,4,5,6, 17-1
		3	죽교동 79-9,10, 575-269, 575-21 북항로 71 북항로56번길 7, 7-1, 10-1,2 양을로 5-3, 7-1, 12 양을로7번길 9-1 죽교천로 4-2, 19-2,3		3	죽교동 79-9,10, 575-269, 575-21 북항로56번길 7, 7-1 양을로 12 죽교천로 19-2,3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죽교동	11	1	죽교동 79-9, 574-22,30 양을로 3, 3-1, 5, 5-2, 7-1, 11, 11-1, 13, 13-1,2 죽교천로 15-3,4,5,6, 19-3, 21, 25, 25-1, 31-2	11	1	죽교동 574-22,30 양을로 3, 3-1, 5, 5-2, 5-3, 7-1, 11, 11-1, 13, 13-1,2 죽교천로 25, 25-1, 27, 29, 31, 31-1,2, 33, 33-1,2
		2	죽교동 574-63,65,66,208,210 북항로72번길 9-1,2 양을로 1-6,7 양을로7번길 1, 3, 4, 4-1,3, 5-1,4, 8-1, 9-1		2	죽교동 574-63,65,66,208,210 북항로72번길 9, 9-1,2 양을로 1-6,7 양을로7번길 1, 3, 4, 4-1,2,3, 5-1,4, 8-1
		3	죽교동 574-109, 575-101, 582-113 북항로72번길 5-1,2, 7, 7-1 북항로74번길 6-1, 8-1,2, 14, 14-1,2 양을로7번길 9,9-1,3,6 죽교천로 37-1,39, 39-1, 43		3	죽교동 574-109, 575-101, 582-113 북항로72번길 5-1,2 북항로74번길 6-1, 8-1,2, 14, 14-1,2 죽교천로 37-1,39, 39-1, 43
		4	죽교동 574, 574-73, 582-36 북항로72번길 7-2,3,4,6,7,9 북항로74번길 7-1 양을로7번길 5, 5-2,3, 9, 9-1~10 죽교천로 37, 37-1, 39		4	죽교동 574, 574-73, 582-36 북항로72번길 7,7-1,2,3,4,6,7,9 양을로7번길 5, 5-2,3, 9, 9-1~10, 10 죽교천로 37
	12	1	북항로 68, 70, 70-1,2, 72 북항로72번길 2, 4, 4-1,2,3, 6, 7-1,5, 8, 8-1, 9, 10 북항로74번길 7-1, 9 북항로78번길 16 양을로 1, 1-2,3,4,5	12	1	북항로 68, 70, 70-1,2, 72 북항로72번길 2, 4, 4-1,2,3, 6, 8, 8-1, 10 북항로74번길 7-1, 9 북항로78번길 16 양을로 1, 1-2,3,4,5
		2	죽교동 582-92 북항로74번길 14-2, 15, 15-1,3,4,5,6 북항로78번길 15, 15-1, 16-1, 17, 18, 20		2	죽교동 582-92 북항로74번길 15, 15-1,3,4,5,6 북항로78번길 15, 15-1, 16-1, 17, 18, 20
		3	북항로 74, 74-1, 76, 76-1, 80, 82-1,2,3,5, 84 북항로72번길 1, 1-1, 3 북항로74번길 1, 3, 3-1, 5 북항로78번길 2, 2-1, 4, 4-1,2, 6, 6-1,2,3		3	북항로 74, 74-1, 76, 76-1, 80, 82-1,2,3,5, 북항로72번길 1, 1-1, 3 북항로74번길 1, 3, 3-1, 5 북항로78번길 2, 2-1, 4, 4-1,2, 6, 6-1,2,3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죽교동	13	2	북항로108번길 10, 10-1,2, 11, 12, 12-1, 14, 14-1,2, 16, 18-1 원산로 3-2	13	2	북항로108번길 10, 10-1,2, 11, 12, 12-1, 14, 14-1,2 원산로 3-2
		3	죽교동 580-300,303 북항로 110, 110-1,2,3,4, 112, 112-1,2,3,8,9,10,11,12, 114-1, 116 북항로108번길 15-1, 18		3	죽교동 580-300,303 북항로 110, 110-2,3,4, 112, 112-1,2,3,8,9,10,11,12, 114-1, 116 북항로108번길 15-1, 18
		4	북항로 113, 116-1, 118, 120, 120-1,2 122, 122-1,2,3,4, 124, 124-1, 126, 128 북항로108번길 18-1, 19, 19-1, 20, 22, 22-1,2,3, 23, 24, 24-1, 25 원산로 1, 3-3, 6, 6-1, 8, 8-1,2,3, 10, 12 죽교천로 93, 107		4	북항로 113, 116-1, 118, 120, 120-1,2 122, 122-1,2,3,4, 124, 124-1, 126, 128 북항로108번길 19, 19-1, 20, 22, 22-1,2,3, 23, 24, 24-1, 25 원산로 6, 6-1, 8, 8-1,2,3, 10, 12
		5	북항로108번길 16 원산로 1, 3-1,2,3 해양대학로 227 해양대학로251번길 17-1		5	북항로108번길 16 원산로 3-1 죽교천로 93, 103, 107, 107-1
	14	1	북항로81번길 14-14 죽선로 33, 33-2, 34, 39, 39-1	14	1	북항로81번길 14-14 죽선로 33, 33-2, 39, 39-1
		3	죽교동 22-25,28, 37-13,39,40,76, 42-30 북항로81번길 14-12,13,14,16, 16, 17, 18-1 죽교길11번길 11-1 죽선로 39-2, 43		3	죽교동 22-25,28, 37-13,39,40,76, 42-30 북항로81번길 14-12,13,16, 16, 17, 18-1 죽교길11번길 11-1 죽선로 39-2, 43
	15	1	북항로 83, 85, 87-3, 89-3,4,5, 91-2, 93 북항로59번길 26, 28, 30 죽선로 34, 38, 42-1	15	1	북항로 83, 85, 87-3, 89-3,4,5, 91-2 북항로59번길 26, 28, 30 죽선로 34, 38, 42-1
		2	북항로 89-1, 93, 95, 95-1,2,3, 97, 97-1, 99, 101, 103 죽선로 42-2,3, 44, 44-1,2, 46, 46-1		2	북항로 89-1, 93, 95, 95-1,2,3, 97, 97-1, 99, 101 죽선로 42-2,3, 44, 44-1,2, 46, 46-1
	16	2	죽선로55번길 1-1, 4, 4-2,3, 6, 10, 10-3,4, 12, 12-1, 13, 13-1, 14, 15, 15-1, 16	16	2	16통 2반 중복 기재로 삭제
		4	죽교동 516-6,61,87,116,206, 518 북항로121번길 17-2,14,18,25		4	죽교동 516-6,61,87,116,206, 518 북항로121번길 17-2,14,18,25,26

동 명	개 정 전			개 정 후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죽교동	1	3	달성길91번길 8-1,2,3,4,5,6 달성길105번길 14, 14-1,2, 수문로101번길 17, 18-2,3,5, 20, 20-2,4,6,7, 22, 22-2 수문로111번길 22, 22-1	1	3	달성길91번길 8-1,2,3,4,5,6,11 달성길105번길 14, 14-1,2 수문로101번길 17, 18-2,3,5, 20, 20-2,4,6,7, 22, 22-2 수문로111번길 22, 22-1
	4	1	죽교동 80-95 북항로55-4 신죽길 31-1 죽선로 1, 3, 5-1	4	1	죽교동 80-95 신죽길 31-1 죽선로 1, 3, 5-1
	7	1	죽교동 575-217 북항로 59-2, 61, 63, 63-3, 65, 65-1, 67, 71 북항로59번길 3-2, 6, 6-1, 10	7	1	죽교동 575-217 북항로 59-2, 61, 63, 63-3, 65, 65-1, 67, 71 북항로59번길 6, 6-1, 10
		2	죽교동 40-26,59 북항로 51, 51-1,2, 53, 53-1,2, 3,4,5,6, 55-2,4, 57-1, 59 북항로59번길 3-1,2, 5-2,4,5 죽선로 6, 8		2	죽교동 40-26 북항로 51, 51-1,2, 53, 53-1,2, 3,4,5,6, 55-2,4,5, 57-1, 59 북항로59번길 3-1,2, 5-2,4, 죽선로 6, 8
		3	죽교동 573-2 북항로 42, 44, 44-1,2, 50-1, 52-1 죽교천로 2, 2-1, 3-1, 4, 4-1,2, 6, 7, 8, 8-2 청호로67번길 16-4, 20, 24, 24-1,2,4,7,8, 10,11,13,15,16 청호로85번길 20-3, 24, 24-1		3	죽교동 573-2 북항로 42, 44, 44-1,2 죽교천로 2, 2-1, 3-1, 4, 4-1,2, 6, 7, 8, 8-2 청호로67번길 16-3,4, 20, 24, 24-1,2,4,7,8,10,11,13,15,16 청호로85번길 16, 18, 18-1,2,4,5, 24, 24-1
		4	죽교동 573-284 북항로 48, 48-1, 50-1, 52, 52-1,3,4, 54, 54-1,4 북항로56번길 6-1, 7 죽교천로 1, 2, 3-1, 5, 7, 9-1, 2,3,4, 11, 11-1, 13, 13-3,4,5 청호로67번길 16-3, 24 청호로85번길 17, 19-4,5, 20-1, 2,3,4,6, 22, 22-1, 23		4	죽교동 573-284 북항로 48, 48-1, 50-1, 52, 52-1,3,4, 54, 54-1,4 죽교천로 1, 5, 9-1,2,3,4, 10, 10-1, 11, 11-1, 13, 13-3,4,5 청호로85번길 17, 19-4,5, 20-1, 2,3,4,6, 22, 22-1, 23
	8	1	죽교동 538-12,13,32,33,34,35, 52,93,95,145 북항로149번길 4 해양대학로 227-2, 229-1,2, 3,6, 243-4,5,6,7,8 해양대학로251번길 11, 11-1, 2,3,4,5,6,7,8, 13, 15-1	8	1	죽교동 538-12,13,32,33,34,35, 52,93,95,145 북항로149번길 4 해양대학로 227, 227-2, 229-1,2, 3,6, 243-4,5,6,7,8 해양대학로251번길 11, 11-1, 2,3,4,5,6,7,8
		4	죽교동 536-4,5,7,76,112 북항로 128-1, 130 해양대학로 223-1, 229, 241, 241-1,2, 243, 243-1,3, 253-1, 255 해양대학로 251번길 11-8, 13, 13-1		4	죽교동 536-4,7,76,112 북항로 128-1, 130 해양대학로 223-1, 229, 241, 241-1,2, 243, 243-1,3, 253-1, 255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규칙 제 1899 호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로 한다.

제2조 중 “지정하려는 경우”를 “지정 및 지정 갱신 하려는 경우”로 “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4호 중 “지정”을 “지정 및 지정 갱신”으로 한다.

제6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사망, 질병 등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 또는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80점”을 각각 “80점(지정 갱신 70점)”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별지를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1]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table>
<tr><th>항목</th><th>세부 기준(안)</th><th>배점</th><th>채점</th></tr>
<tr><td rowspan="2">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td><td colspan="3">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td></tr>
<tr><td>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table>
<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
<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
<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
<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
<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
</table>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table>
<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
</table>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td><td>20</td><td></td></tr>
<tr><td></td><td>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table>
<tr><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5점</td><td>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td></tr>
<tr><td>3점</td><td>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td></tr>
</table></td><td>5</td><td></td></tr>
</table>

<table>
<tr><td></td><td>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table><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tr><td>① A등급(10점)</td><td>② B등급(8점)</td><td>③ C등급(6점)</td></tr><tr><td>④ D등급(4점)</td><td>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0점)</td><td></td></tr><tr><td colspan="3">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td></tr></table></td><td>10</td><td></td></tr>
<tr><td rowspan="5">2.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td><td colspan="2">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td></tr>
<tr><td>2-1.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td><td>4</td><td></td></tr>
<tr><td>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td><td>3</td><td></td></tr>
<tr><td>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
□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여부</td><td>3</td><td></td></tr>
<tr><td>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table><tr><th>급여종류</th><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 rowspan="3">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td><td>2점</td><td>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td></tr><tr><td>1점</td><td>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td></tr><tr><td>0점</td><td>해당 없음</td></tr><tr><td rowspan="3">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td><td>2점</td><td>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td></tr><tr><td>1점</td><td>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td></tr><tr><td>0점</td><td>1종 급여 제공</td></tr></table></td><td>2</td><td></td></tr>
<tr><td rowspan="3">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td><td colspan="2">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td></tr>
<tr><td>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td><td>5</td><td></td></tr>
<tr><td>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세입·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td><td>8</td><td></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td><td colspan="3">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td></tr>
<tr><td>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 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table><tr><th>점수</th><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5점</td><td>충족</td><td>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td></tr><tr><td>0점</td><td>미충족</td><td>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되지 않음</td></tr></table></td><td>5</td><td></td></tr>
<tr><td>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연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성희롱·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마련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td><td>5</td><td></td></tr>
<tr><td rowspan="3">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td><td colspan="3">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td></tr>
<tr><td>5-1. 설치·운영자의 노인복지분야 서비스 제공 전문성
<table><tr><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6점</td><td>노인복지 실무경력 10년 이상</td></tr><tr><td>3점</td><td>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td></tr><tr><td>0점</td><td>노인복지 실무경력 없거나 5년 미만</td></tr></table></td><td>6</td><td></td></tr>
<tr><td>5-2. 대표자의 근무 형태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① 시설장 : 2점</td><td>② 근무없음 : 0점</td><td>③ 종사자 근무 : -2점</td></tr></table>*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는 대표자에 해당되며, 대표자가 채용한 시설장의 하급(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정상적인 운영관리 수행이 어려움</td><td>2</td><td></td></tr>
<tr><td></td><td>5-3. 이용자의 편의 및 응급상황 대처 등을 고려하여 1층 시설로 운영(생활시설 및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시설 해당)
* 해당 외 시설은 점수 2점 부여함</td><td>2</td><td></td></tr>
<tr><td rowspan="6">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td><td colspan="3">면접심사</td></tr>
<tr><td>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td><td>4</td><td></td></tr>
<tr><td>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td><td>4</td><td></td></tr>
<tr><td>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td><td>4</td><td></td></tr>
<tr><td>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td><td>4</td><td></td></tr>
<tr><td>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td><td>4</td><td></td></tr>
<tr><td colspan="4">※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u>80점 이상</u>이어야 함</td></tr>
<tr><td colspan="4">총점 : _____ 점</td></tr>
<tr><td colspan="4">20 . . . 심사위원 : _____ (서명)</td></tr>
</table>

2. 복지용구

<table>
<tr><th>항목</th><th>세부 기준(안)</th><th>배점</th><th>채점</th></tr>
<tr><td rowspan="4">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td><td colspan="3">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td></tr>
<tr><td>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table>
<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
<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
<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
<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
<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
</table>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table>
<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
</table>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td><td>20</td><td></td></tr>
<tr><td>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table>
<tr><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
<tr><td>5점</td><td>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td></tr>
<tr><td>3점</td><td>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td></tr>
</table></td><td>5</td><td></td></tr>
<tr><td>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table>
<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
<tr><td>① A등급(10점)</td><td>② B등급(8점)</td><td>③ C등급(6점)</td></tr>
<tr><td>④ D등급(4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td></tr>
<tr><td colspan="3">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td></tr>
</table></td><td>10</td><td></td></tr>
<tr><td rowspan="2">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td><td colspan="3">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td></tr>
<tr><td>2-1.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제품안내·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td><td>10</td><td></td></tr>
</table>

적절성 (20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2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	8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 (세입·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3	
	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수립 여부 □ 성희롱·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	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 관련 계획수립 및 담당지정 여부	8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구비 여부 □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 구비 여부	8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 공간 확보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수불부·A/S대장 등)	4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면접심사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5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_____ 점

20 . . . 심사위원 : _____ (서명)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충실히 마련 위탁 : 위탁 증명 서류 완벽히 구비
6점	우수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적절히 마련
4점	보통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마련
2점	미흡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미흡 위탁 : 위탁 증명 서류 미흡
0점	매우미흡	자체, 자체+위탁, 위탁 중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소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 서류가 없음)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4점	매우우수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마련
2점	보통	공간 또는 관리 서류 중 한 가지가 미흡
0점	미흡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미흡

[별표 2]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9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table>
<tr><th>항 목</th><th>세부 기준(안)</th><th>배점</th><th>채점</th></tr>
<tr><td rowspan="3">1.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td><td colspan="3">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td></tr>
<tr><td>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최근 6년 이내)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table>
<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
<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
<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
<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
<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
</table>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table>
<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
<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
<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
<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
</table>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td><td>20</td><td></td></tr>
<tr><td>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최근 6년 이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table>
<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
<tr><td>① A등급(15점)</td><td>② B등급(12점)</td><td>③ C등급(9점)</td></tr>
<tr><td>④ D등급(6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거부 등)(0점)</td></tr>
</table></td><td>15</td><td></td></tr>
</table>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최근 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 일 때 해당

① 휴업이력(2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② 폐업이력(3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이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적용기간은 지정유효기간 내(6년) 기준으로 하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음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사업계획(2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	**2점**
정기평가 (2점)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	**1점**
	②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1점**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

① 노인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 이상)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 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	**1점**
교육 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1점**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2

2-3. 수급자(이용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 고충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을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규정 마련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절차 운영	**1점**
(2)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1점**
	② 기록물 별도 보관 등의 조치 시행 여부	**1점**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2점**

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별급여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감염병 및 위험요소의 예방·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1) 서비스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1점

(2)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	1점

4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시설 현황 등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1) 운영위원회 구성(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됨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1점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른 운영 여부	1점

(2) 운영위원회 실시(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1점
	② 운영위원회 논의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을 시군구에 제출·보고함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개최	1점
	②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1점

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1) 회계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실시	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실시	2점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	2점

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2) 재정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2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1) 재해예방(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재해발생대비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1점
② 재해발생대비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	1점

(2) 안전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 실시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목욕·간호)	①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	2점

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1) 고용계약(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1점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준수 여부	1점

(2) 급여수준(7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4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	2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	1점

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확인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연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등)를 위한 지원 여부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여부	2점

② 고충처리(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종사자의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 여부	2점
②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여부	2점

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면접심사		
	5-1. 제반 관련 규정 - 행정처분 관련	4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 기관평가 관련	4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	
	※ 대면평가 면제 기관의 경우, 기본 점수(12점)로 부여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_____ 점			
20 . . . 심사위원 : _____ (서명)			

2. 복지용구

<table>
<tr><th>항 목</th><th>세부 기준(안)</th><th>배점</th><th>채점</th></tr>
<tr><td rowspan="3">1.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td><td colspan="2">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 제공 이력 등</td></tr>
<tr><td>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최근 6년 이내)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td><td>20</td><td></td></tr>
<tr><td>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최근 6년 이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거부 등)(0점)	

</td><td>15</td><td></td></tr>
</table>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최근 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① 휴업이력(2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② 폐업이력(3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이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적용기간은 지정유효기간 내(6년) 기준으로 하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음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연간사업계획(2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	**2점**
정기평가 (2점)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	**1점**
	②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1점**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

① 노인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 이상)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 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	**1점**
교육 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1점**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2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 고충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을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규정 마련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절차 운영	**1점**
(2)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1점**
	② 기록물 별도 보관 등의 조치 시행 여부	**1점**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2점**

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기적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서비스 관리(2점)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 여부	1점
(2)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 - 구입제품 : 제공할 때 - 대여제춤 :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이용자 방문	1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	1점
(2)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	1점

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시설 현황 등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운영위원회 실시(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배치의 적정성	2점
(2)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수불부대장, A/S대장 등) 기록 여부	2점

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회계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실시 여부	2점
(2)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2점

② 재정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 여부	2점
(2)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	2점

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재해예방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 여부	2점
② 안전관리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2점

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① 고용계약(2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1점** (2)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1점** ② 급여수준(7점) - ①문항 기본점수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4점**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 **2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 **1점**	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연1회 이상 건강검진 등)를 위한 지원 여부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여부 **2점** 고충처리(4점) ① 종사자의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 여부 **2점** ②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 **2점**	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면접심사		
	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_____ 점			
20 . . . **심사위원** : _____ (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
제2조(설치) 목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설치) ---------- 지정 및 지정 갱신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제2항----------.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	4. ---------- 지정 및 지

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 갱신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망, 질병 등으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 ---------- 별표 1 또는 별표 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1. ---------- 80점(지정 갱신 70점) -----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2. ---------- 80점(지정 갱신 70점) --. ----------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규칙 제 1900 호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교수 및 강사 실비보상 기준

(단위 : 원)

구 분	계	기본급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원 감	**1,879,080**	1,370,680	127,900	64,000	176,500	140,00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교 수	**1,751,180**	1,370,680		64,000	176,500		
강 사	**1,492,390**	1,175,890			176,500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조 석 훈**

목포시 규칙 제 1901 호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향악단 상임단원 월 봉급표 (별표1)

(단위 : 원)

호 봉	본 봉	예능수당	계
1-1	832,540	225,700	1,058,240
1-2	911,100	239,500	1,150,600
1-3	974,170	252,400	1,226,570
1-4	1,022,090	265,200	1,287,290
1-5	1,049,020	277,300	1,326,320
1-6	1,062,660	287,600	1,350,260
1-7	1,072,210	298,000	1,370,210
1-8	1,103,150	303,100	1,406,250
1-9	1,133,030	308,300	1,441,330
1-10	1,162,270	317,700	1,479,970
1-11	1,190,880	322,100	1,512,980
1-12	1,218,750	327,000	1,545,750
1-13	1,246,930	332,400	1,579,330
1-14	1,274,180	339,300	1,613,480
1-15	1,302,680	346,200	1,648,880
1-16	1,344,800	351,300	1,696,100
1-17	1,382,390	356,500	1,738,890
1-18	1,424,520	361,600	1,786,120
1-19	1,457,460	368,500	1,825,960
1-20	1,490,180	377,200	1,867,380
1-21	1,518,160	385,700	1,903,860
1-22	1,560,390	390,900	1,951,290
1-23	1,593,220	399,500	1,992,720
1-24	1,622,470	408,100	2,030,570
1-25	1,654,140	416,700	2,070,840
1-26	1,686,970	423,600	2,110,570
1-27	1,719,910	430,400	2,150,310
1-28	1,752,640	439,100	2,191,740
1-29	1,785,260	445,900	2,231,160
1-30	1,949,430	485,500	2,434,930

〔별표 2〕

상임단원 월 봉급표 (별표2)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위 : 원)

호 봉	본 봉	예능수당	계
2-1	787,240	224,000	1,011,240
2-2	829,200	230,100	1,059,300
2-3	857,370	235,600	1,092,970
2-4	882,790	241,100	1,123,890
2-5	899,020	247,100	1,146,120
2-6	897,860	253,200	1,151,060
2-7	900,110	258,300	1,158,410
2-8	921,250	263,600	1,184,850
2-9	942,230	268,600	1,210,830
2-10	962,970	273,900	1,236,870
2-11	984,180	279,000	1,263,180
2-12	1,004,850	282,500	1,287,350
2-13	1,025,430	287,600	1,313,030
2-14	1,049,580	292,700	1,342,280
2-15	1,064,480	298,000	1,362,480
2-16	1,084,100	303,100	1,387,200
2-17	1,103,290	310,000	1,413,290
2-18	1,139,120	319,000	1,458,120
2-19	1,177,760	328,000	1,505,760
2-20	1,200,180	336,900	1,537,080
2-21	1,247,960	345,900	1,593,860
2-22	1,292,090	354,700	1,646,790
2-23	1,339,920	365,100	1,705,020
2-24	1,377,770	373,900	1,751,670
2-25	1,417,040	382,900	1,799,940
2-26	1,457,370	392,100	1,849,470
2-27	1,498,810	401,500	1,900,310
2-28	1,541,340	411,100	1,952,440
2-29	1,585,060	421,100	2,006,160
2-30	1,639,030	431,100	2,070,130

〔별표 3〕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월 봉급표 (별표3)

(단위 : 원)

호 봉	본 봉	예능수당	계
3-1	3,201,980	637,200	3,839,180
3-2	3,251,590	656,000	3,907,590
3-3	3,302,060	675,900	3,977,960
3-4	3,353,580	696,600	4,050,180
3-5	3,405,840	718,100	4,123,940
3-6	3,459,260	740,700	4,199,960

〔별표 4〕

상임지휘자, 상임안무자, 상임연출자 월 봉급표 (별표4)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위 : 원)

호 봉	본 봉	예능수당	계
4-1	2,436,080	371,400	2,807,480
4-2	2,519,990	377,800	2,897,790
4-3	2,607,160	384,400	2,991,560
4-4	2,697,080	391,300	3,088,380
4-5	2,790,440	398,300	3,188,740
4-6	2,887,060	405,300	3,292,360

〔별표 5〕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표 (별표5)

(단위 : 원)

구 분		월수당액	비 고
교향악단	지휘자	1,197,520	
	부지휘자	997,250	
	악 장	883,230	
	단무장	883,230	
	수 석	797,820	
	정단원	797,820	
	준단원	683,800	
	연구단원	575,690	
합창단	지휘자	1,139,670	
	단무장	939,080	
	반주자	598,390	
	수 석	598,390	
	단 원	575,690	
무용단	안무자	1,139,670	
	훈련장	911,840	
	단 원	575,690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541,810	
	단무장	911,840	
	반주자	633,230	
	안무자	633,230	
연극단	연출자	1,787,480	
	단무장	911,840	
	단 원	593,010	

목포시 고시 제2025 - 222호

2026년도 목포시 예산 확정 고시

목포시의회 의결을 얻은 202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을「지방자치법」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9.

목 포 시 장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비고
합 계		1,026,721,850	1,002,805,941	23,915,909	2.38%	
일 반 회 계		942,163,546	913,311,132	28,852,414	3.16%	
특 별 회 계		84,558,304	89,494,809	△4,936,505	△5.52%	
공기업	소 계	71,716,587	76,329,159	△4,612,572	△6.04%	
	상수도사업	27,221,168	23,121,154	4,100,014	17.73%	
	하수도사업	43,940,000	51,147,005	△7,207,005	△14.09%	
	공영개발사업	555,419	2,061,000	△1,505,581	△73.05%	
기타	소 계	12,841,717	13,165,650	△323,933	△2.46%	
	주 택 사 업	32,669	78,993	△46,324	△58.64%	
	교 통 사 업	7,083,749	8,852,489	△1,768,740	△19.98%	
	의료급여기금	5,659,599	4,189,838	1,469,761	35.08%	
	자 원 순 환	47,000	25,630	21,370	83.38%	
	발전소주변지역	18,700	18,700	0	0.0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훈령 제873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5년 12월 29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정원 승인서

부 서		현 정원	조정	증감	조정내역			비 고
합 계				-				
본청	소 계	737	741	⊕4				
	감 사 실	12	12	-	8급	행 정	△1	
					8급	행정+사회복지	⊕1	
	기 획 예 산 과	23	23	-	9급	행 정	△1	
					9급	행 정 + 세 무	⊕1	
	세 정 과	46	46	-	7급	세 무	△1	
					7급	행 정 + 세 무	⊕1	
					8급	세 무	△1	
					8급	행 정 + 세 무	⊕1	
					9급	세 무	△1	
					9급	행 정 + 세 무	⊕1	
	회 계 과	25	25	-	9급	행 정	△1	
					9급	행 정 + 세 무	⊕1	
	노인장애인과	21	25	⊕4	6급	사 회 복 지	⊕1	
					8급	사 회 복 지	⊕1	
					8급	사회복지+간호	⊕1	
					9급	사 회 복 지	⊕1	
	인 재 육 성 과	23	23	-	9급	사 서	△1	
					8급	사 서	⊕1	
	스포츠산업과	16	16	-	9급	행 정	△2	
					9급	행정+방송통신	⊕2	
	수 산 산 업 과	24	24	-	9급	해 양 수 산	△1	
					9급	행정+해양수산	⊕1	
	기 후 환 경 과	17	17	-	9급	행 정	△1	
					9급	행 정 + 환 경	⊕1	
	재 난 안 전 과	21	21	-	6급	행 정 + 시 설	△1	
					6급	행 정 + 시 설 + 방 재 안 전	⊕1	
					7급	행 정	△2	
					7급	행정+방재안전	⊕2	
					9급	행 정 + 시 설	△1	
					9급	행 정 + 시 설 + 방 재 안 전	⊕1	
	대 중 교 통 과	15	15	-	9급	행 정	△1	

부 서		현 정원	조정	증감	조정내역			비 고
					9급	행 정 + 세 무	⊕1	
의회	소 계			-				
	의 회 사 무 국	35	35	-	7급	행 정	△4	
					8급	행 정	⊕4	
직속기관	소 계			-				
	보 건 위 생 과	25	25	-	6급	보건+식품위생	△1	
					6급	행정+보건+식품위생	⊕1	
					8급	식 품 위 생	△1	
					7급	식 품 위 생	⊕1	
	하당보건지소	22	22	-	9급	보건+의료기술	△1	
					9급	사회복지+보건+의 료 기 술	⊕1	
					9급	보 건	△2	
					9급	사회복지+보건	⊕2	
					8급	간 호	△1	
					7급	간 호	⊕1	
사업소	소 계			-				
	수 도 과	41	41	-	연구사	환 경 연 구 사	△1	
					6급	환 경	⊕1	
	하 수 과	27	27	-	9급	공 업	△1	
					7급	공 업	⊕1	
	자동차등록사무소	18	18	-	9급	공 업	△1	
					7급	공 업	⊕1	
동행정복지센터	소 계	328	324	△4				
	용 당 1 동	14	14	-	8급	행 정	△1	
					8급	행정+방재안전	⊕1	
	용 당 2 동	14	13	△1	9급	사 회 복 지	△1	
	연 동	13	13	-	9급	사 회 복 지	△2	
					9급	행정+사회복지	⊕2	
	연 산 동	13	13	-	9급	사 회 복 지	△2	
					9급	행정+사회복지	⊕2	
	목 원 동	14	13	△1	7급	사 회 복 지	△1	

부 서	현 정원	조정	증감	조정내역			비 고
유 달 동	13	13	-	9급	사 회 복 지	△2	
				9급	행정+사회복지	⊕2	
북 항 동	14	13	△1	8급	사 회 복 지	△1	
용 해 동	18	17	△1	8급	행정+사회복지	△1	
				9급	사 회 복 지	△1	
				9급	행정+사회복지	⊕1	
상 동	19	19	-	9급	행 정	△1	
				9급	행정+방재안전	⊕1	
				9급	사 회 복 지	△1	
				9급	행정+사회복지	⊕1	
하 당 동	15	15	-	9급	사 회 복 지	△1	
				9급	행정+사회복지	⊕1	
신 흥 동	16	16	-	9급	사 회 복 지	△1	
				9급	행정+사회복지	⊕1	
삼 향 동	13	13	-	9급	사 회 복 지	△1	
				9급	행정+사회복지	⊕1	
옥 암 동	14	14	-	8급	행 정	△1	
				8급	행정+방재안전	⊕1	
부 흥 동	14	14	-	9급	사 회 복 지	△1	
				9급	행정+사회복지	⊕1	
부 주 동	18	18	-	9급	사 회 복 지	△1	
				9급	행정+사회복지	⊕1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본청)

기관명		본청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직급	부서명	본청소계		기획예산과	큰목포기획단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	해양개발과	수산산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총계	741	12	23	7	15	46	25	18	35	41	25	30	29	22	10	17	23	16	21	16	16	14	15	24	17	33	19	23	17	20	30	21	24	22	15
정무직	정무직합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합계	730	12	23	7	15	46	25	18	33	41	25	30	29	21	10	15	23	16	21	16	16	12	15	24	17	33	19	23	16	18	29	21	24	22	15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7		1						1					1					1				1				1					1			
	행정	2		1						1																										
	행정+기술	5													1					1				1				1					1			
5급	소계	3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	7		1	1	1	1	1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1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공업+시설	3																			1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6급	소계	166	3	5	3	4	9	6	4	9	7	5	5	6	5	3	4	4	4	5	4	4	4	4	6	4	5	4	6	4	5	7	5	6	4	3
	행정	31		4	1	2		2		5				2			2	2	1	2		1	1			1	1				1			1	2	
	세무	7		1			6																													
	사회복지	5									2	1	2																							
	공업	1				1																														
	해양수산	1																							1											
	시설	2												1																	1					
	운전	4						2		1																	1									
	행정+세무	3					2			1																										
	행정+전산	7				1	1		2	1					1						1															
	행정+사회복지	13									5	3	3									2														
	행정+공업	3																			1							1							1	
	행정+해양수산	4																						1	3											
	행정+환경	5																								2	3									
	행정+시설	35	2		1					1				1	2		1		2	2		1						3	5	4	3		1	3		3
	시설+건축운영	1																											1							
	운전+기계운영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8												2		1		2			1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2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9	1					1							2	2				1	1													1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3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행정+보건+시설+방재안전	1																															1			
	통신운영																																			
	사무운영	3			1														1															1		
7급	소계	218	4	8		3	23	11	5	10	16	6	10	3	6	3	3	1	6	7	6	3	4	2	7	7	13	5	5	4	6	7	9	5	5	5
	행정	54	2	7		1		2		8					3	1	2	1	4	2	1	3				2	2	1	1	1	3			2	2	3
	세무	20					19	1																												
	전산	2						1																									1			
	사회복지	26									15	3	8																							
	공업	10	1					1							1					1	2						2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6																							6											
	환경	3																								3										
	시설	29	1					1						2	1	1			1	1				2				4	4	3	3		2	2	1	
	방송통신	4							3																								1			
	운전	15				1		4		1																	7					1			1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5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4**									2	2																									
	행정+공업	**4**				1								1		1																					1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환경	**4**																	1						1	2											
	행정+시설	**4**																	1												1	1	1				
	행정+방재안전	**3**																														3					
	전산+방송통신	**2**							2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8급	**소계**	**164**	**4**	**4**	**2**	**5**	**9**	**5**	**4**	**3**	**11**	**9**	**10**	**8**	**7**	**1**	**2**	**4**	**1**	**2**	**3**	**6**	**2**	**5**	**4**		**11**	**5**	**4**	**7**	**2**	**4**	**3**	**6**	**6**	**5**
	행정	**45**	1	3	1	2		2		2	1		1	4	2		1	1		2	2	4		2	1			1	1	2	2			1	2	4
	세무	**6**					5			1																											
	전산	**4**					1		2					1																							
	사회복지	**22**									9	6	7																								
	사서	**3**																3																			
	공업	**4**						1								1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1	2												
	환경	**1**																									1										
	시설	**19**	1											3	2									1			1	2	2	3				3	1	
	방송통신	**1**							1																												
	운전	**12**				1		1					1														6	1							2	
	행정+세무	**5**		1			3	1																													
	행정+전산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4**										1			2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1														1									1	1	1				1		1
	행정+방송통신	**2**				1																											1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간호	**2**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1		1					1															
	녹지+시설	**1**																												1							
	보건+간호	**1**											1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9급	**소계**	**141**		**4**	**1**	**2**	**4**	**2**	**4**	**8**	**6**	**4**	**4**	**11**	**1**	**2**	**5**	**13**	**4**	**5**	**2**	**2**	**1**	**2**	**6**	**5**	**3**	**3**	**7**		**5**	**10**	**2**	**6**	**6**	**1**
	행정	**37**		3	1					6				2	1	1	1	6		3	1	1			1			1	4		2			2	1	
	세무	**3**					3																														
	전산	**3**							1	1								1																			
	사회복지	**8**									3	3	2																								
	사서	**1**																1																			
	방호	**1**															1																				
	공업	**3**																1	1										1								
	농업																																				
	녹지	**4**																														4					
	해양수산	**2**																							2												
	환경	**3**																								2	1										
	시설	**17**												8				1							1			1	1		2	1		2			
	시설관리	**1**																																	1		
	운전	**9**																								1	1					3		2	2		
	행정+세무	**4**		1			1	1																													1
	행정+전산	**5**				2				1						1																			1		
	행정+사회복지	**6**									3		2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4**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해양수산	**3**																						1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7**						1						1					1					1			1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2**															1	1																			
	시설+방재안전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3**																		2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전화상담운영	**2**							2																												
연구직	**연구직합계**	**7**								**1**					**1**		**2**													**1**	**2**					

연구관	**소 계**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소 계**	**6**							**1**					**1**		**2**												**1**	**1**					
	학 예 연 구 사	**5**												**1**		**2**												**1**	**1**					
	기 록 연 구 사	**1**							**1**																									
지도직	**지 도 직 합 계**	**3**																			**2**									**1**				
지도사	**소 계**	**3**																			**2**									**1**				
	농 촌 지 도 사	**3**																			2									1				

[별표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의회, 직속기관)

기 관 명		의회	직속기관			
직급	부 서 명	의회사무국 소계	직속기관 소계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총 계	**35**	**80**	**25**	**33**	**22**
일반직	**일 반 직 합 계**	**35**	**80**	**25**	**33**	**22**
4급	**소 계**	**1**	**1**	**1**		
	기 술		1	1		
	행 정 + 기 술	1				
5급	**소 계**	**3**	**3**	**1**	**1**	**1**
	행 정	1				
	행 정 + 공 업 + 시 설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6급	**소 계**	**6**	**15**	**5**	**6**	**4**
	행 정	5				
	보 건		**1**			1
	행 정 + 보 건		**3**	2		1
	보 건 + 식 품 위 생					
	보 건 + 약 무		**1**	1		
	보 건 + 간 호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1				
	행정+보건+식품위생		**2**	2		
	행 정 + 보 건 + 간 호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7급	**소 계**	**14**	**23**	**7**	**14**	**2**
	행 정	12				
	전 산	1				
	속 기	1				
	보 건		**1**	1		
	식 품 위 생		**1**	1		
	간 호		**10**		9	1
	행 정 + 간 호		**1**		1	
	보 건 + 식 품 위 생		**4**	4		
	보 건 + 간 호		**4**		3	1
	의 료 기 술 + 간 호		**1**		1	
	보 건 + 약 무 + 간 호		**1**	1		
8급	**소 계**	**10**	**24**	**6**	**10**	**8**
	행 정	6				
	속 기	2				
	공 업		**1**	1		
	보 건		**4**	2	2	
	식 품 위 생					
	의 료 기 술		**6**		6	
	간 호		**3**	1	1	1
	방 송 통 신	1				
	운 전	1				
	사 회 복 지 + 간 호		**3**			3
	보 건 + 식 품 위 생		**2**	2		
	보 건 + 간 호		**3**			3
	의 료 기 술 + 간 호		**2**		1	1
9급	**소 계**	**1**	**14**	**5**	**2**	**7**
	보 건		**1**			1
	식 품 위 생		**1**	1		
	운 전	1	**3**	1	1	1
	사 회 복 지 + 보 건		**5**	2	1	2
	보 건 + 식 품 위 생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2**			2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		**1**			1

[별표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사업소)

기관명		사업소									
			맑은물사업단				기타사업소				
직급	부서명	사업소소계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자동차등록사무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총계	194	41	27	28	15	18	14	18	18	15
일반직	일반직합계	188	40	27	28	15	18	14	13	18	15
4급	소계	1	1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8	1	1	1	1	1	1		1	1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환경연구관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관	1				1					
6급	소계	42	11	5	6	4	4	2	4	3	3
	행정	2	1	1							
	방호	1							1		
	공업	1				1					
	환경	1	1								
	시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공업	3			1					2	
	행정+시설	7	1	1		1	2	1			1
	행정+학예연구사	2							2		
	공업+환경	2			1	1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연구사	1			1						
	행정+전산+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3					1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환경연구사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7급	**소계**	**45**	**14**	**8**	**4**	**2**	**4**	**2**	**3**	**4**	**4**
	행정	**9**	3	2			1	1		1	1
	세무	**1**								1	
	전산	**1**							1		
	방호	**1**	1								
	공업	**17**	2	5	4	1	1		1	2	1
	환경	**2**	1			1					
	시설	**2**	1	1							
	운전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공업+시설	**1**	1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3**	1								2
	열관리운영	**1**						1			
8급	**소계**	**49**	**7**	**9**	**5**	**5**	**5**	**3**	**4**	**7**	**4**
	행정	**13**	3	2		1	1	1		4	1
	세무	**2**								2	
	공업	**14**		3	3	3	2	1	2		
	환경	**2**	2								
	시설	**7**	1	3				1	2		
	방송통신	**1**					1				
	운전	**1**		1							
	공업+환경	**2**	1								1
	공업+시설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3**				1				1	1
	화공운영	**1**			1						
9급	**소계**	**43**	**6**	**4**	**12**	**3**	**4**	**6**	**2**	**3**	**3**
	행정	**1**							1		
	공업	**12**	1		3	2	1	1	1	1	2
	환경	**3**	1		2						
	시설	**1**		1							
	방송통신	**1**					1				
	운전	**6**	1	1				3			1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시설	**1**			1						
	공업+시설										
	행정+공업+시설	**1**		1							
	공업+시설+환경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7**	1	1	4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1**						1			
연구직	**연구직합계**	**6**	**1**						**5**		
연구관	**소계**	**1**							1		
	행정+학예연구관	**1**							1		
연구사	**소계**	**5**	**1**						**4**		
	학예연구사	**4**							4		
	환경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사합계**										
	농촌지도사										

[별표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동)

기관명		동																								
직급	부서명	동 소계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용해동	이로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총계	324	14	13	13	13	13	15	13	13	13	13	13	13	13	13	17	13	19	15	16	13	14	14	18
일반직	일반직합계	324	14	13	13	13	13	15	13	13	13	13	13	13	13	13	17	13	19	15	16	13	14	14	18
5급	소계	2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	6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5			1				1	1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6급	소계	47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2	2	2	2	2	2
	행정	19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사회복지	5						1					1				1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4		1	1																			1	1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1		1					1									
7급	소계	54	3	3	2	2	2	3	2	3	2	2	3	2	2	3	2	2	3	3	2	1	2	2	3
	행정	26	1	1	1	1	1	1	1	3		1	2	1		2	1		1	2	1	1	1	1	2
	사회복지	20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간호	2	1	1																					
	행정+사회복지	6									1			1	1		1	1	1						
8급	소계	97	5	3	3	3	3	5	4	4	3	5	3	3	4	4	6	4	7	4	5	5	4	4	6
	행정	27	1	1	1	1	1	1	2		1	2	1		2	1		2		2	1	2		2	3
	사회복지	35	3	1	1	1	1	2	1	2	1	1	1	1	1	1	4	1	4	1	2	1	2		2
	간호	2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12		1				1		1		1		1		1	1		2		1	1		1	
	행정+방재안전	2	1																				1		
9급	소계	103	3	4	5	5	5	4	4	3	5	3	4	5	4	3	6	4	5	5	6	4	5	5	6
	행정	38	1	3	2	1	2	1		1	3	1	2	2	2	1	3	1	1	1	2	1	2	2	3
	사회복지	42	2	1	1	2	1	2	2	2	2	2	2	1	2	2	2	2	2	2	2	2	2	2	2
	행정+사회복지	22			2	2	2	1	2					2			1	1	1	2	2	1	1	1	1
	행정+방재안전	1																	1						

목포시 공고 제2025-18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성초1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29.

목 포 시 장

1. 공고대상: 274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5. 12. 29. ~ 2026. 1. 12. (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목포시 대성초1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061-270-34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2025 대성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예정통지 공시송달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권리관계	성명	주소	반송사유
	지구명	법정동	지번				
274							
1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5-15	토지소유자	강*현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폐문부재
2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3-8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강*민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신경길 **	폐문부재
3	대성초1지구	양동	70-44	토지소유자	강*태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남부로 **, ***동 ****호	폐문부재
4	대성초1지구	양동	143	토지소유자	강*훈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로 **, ***동 ***호	폐문부재
5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21	토지소유자	강*민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번길 **-*, ***호	폐문부재
6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19	토지소유자	강*태랑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안길 *	폐문부재
7	대성초1지구	양동	64-2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강*택	전라남도 목포시 불종대길**번길 *-*	폐문부재
8	대성초1지구	양동	44-7	토지소유자	고*자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길**번길 *	폐문부재
9	대성초1지구	양동	43-18	토지소유자	구*진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번길 **,	폐문부재
10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67	토지소유자	구*우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	폐문부재
11	대성초1지구	양동	2-9 외 9필지	토지소유자	구*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길 *-**, ***호	폐문부재
12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71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권*화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 ***동 ****호	폐문부재
13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33	토지소유자	기*옥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 ***동 ****호	폐문부재
14	대성초1지구	양동	141-5	토지소유자	김*만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길*번길 *-*	폐문부재
15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29외 2필지	토지소유자	김*녀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16	대성초1지구	양동	70-44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김*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 **, ***호	폐문부재
17	대성초1지구	양동	42-13	토지소유자	김*현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로 **	폐문부재
18	대성초1지구	양동	44-15	토지소유자	김*진	전라남도 목포시 원호길*번길 *	폐문부재
19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63	토지소유자	김*완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20	대성초1지구	양동	140-21	토지소유자	김*심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안길 *-*	폐문부재
21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6	토지소유자	김*율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 **, ***동 ***호	폐문부재
22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30	토지소유자	김*숙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안길 *	폐문부재
23	대성초1지구	양동	35	토지소유자	김*한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안길 **-*	폐문부재
24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20	토지소유자	김*순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25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12	토지소유자	김*선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 ***호	폐문부재
26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52	토지소유자	김*희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 *-*	폐문부재
27	대성초1지구	양동	141-34	토지소유자	김*선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폐문부재
28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83	토지소유자	김*단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29	대성초1지구	양동	43-3	토지소유자	김*현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번길 **, ***호	폐문부재
30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66	토지소유자	김*현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	폐문부재
31	대성초1지구	양동	55-8	토지소유자	김*선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32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20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김*우	경기도 광주시 능평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33	대성초1지구	양동	58-1	토지소유자	김*담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폐문부재
34	대성초1지구	양동	141-32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김*여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폐문부재
35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33	토지소유자	김*형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안길 *-*	폐문부재
36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70	토지소유자	김*민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	폐문부재
37	대성초1지구	양동	19-6	토지소유자	김*숙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번길 *-*	폐문부재
38	대성초1지구	양동	70-42	토지소유자	김*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 ***동 ***호	폐문부재
39	대성초1지구	양동	42-5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김*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길 **, ****동 ****호	폐문부재
40	대성초1지구	양동	41-2	토지소유자	김*자	전라남도 목포시 난영길 *-*	폐문부재
41	대성초1지구	양동	42-7	토지소유자	김*단	전라남도 목포시 난영길 **-*	폐문부재
42	대성초1지구	양동	141-9	토지소유자	김*만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폐문부재

43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315	토지소유자	김*일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	폐문부재
44	대성초1지구	양동	44-16	토지소유자	김*순	전라남도 목포시 난영길**번길 *	폐문부재
45	대성초1지구	양동	61-28	토지소유자	김*자	전라남도 목포시 서산로**번길 *	폐문부재
46	대성초1지구	양동	44-12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김*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길 **, ***호	폐문부재
47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5-35	토지소유자	김*현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폐문부재
48	대성초1지구	양동	8-6	토지소유자	김*희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	폐문부재
49	대성초1지구	양동	43-3	토지소유자	김*주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번길 **, ***호	폐문부재
50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90	토지소유자	김*진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51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22	토지소유자	김*암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안길 *	폐문부재
52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3-9	토지소유자	김*식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53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14	토지소유자	김*호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54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53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김*단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55	대성초1지구	양동	62-3	토지소유자	김*단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56	대성초1지구	양동	42-1	토지소유자	김*호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길 **-*	폐문부재
57	대성초1지구	대성동	126-1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김*원익	전라남도 목포시 삼일로**번길 **	폐문부재
58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16	토지소유자	김*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59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16	토지소유자	김*숙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60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5-9	토지소유자	김*규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폐문부재
61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24	토지소유자	김*자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62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36	토지소유자	김*은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63	대성초1지구	죽교동	79-19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김*순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64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32	토지소유자	김*기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 *-*	폐문부재
65	대성초1지구	양동	70-23	토지소유자	김*오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신기산길 **	폐문부재
66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5-26	토지소유자	김*우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67	대성초1지구	양동	70-23	토지소유자	김*철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 가동 ***호	폐문부재
68	대성초1지구	양동	141-25	토지소유자	김*성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 ***동 ***호	폐문부재
69	대성초1지구	죽교동	79-31	토지소유자	김*선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번길 **-*	폐문부재
70	대성초1지구	양동	45-10	토지소유자	남*술	전라남도 목포시 난영길 *-*	폐문부재
71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26	토지소유자	노*완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번길 *, ***호	폐문부재
72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4-48	토지소유자	명*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동 ***호	폐문부재
73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05	토지소유자	명*윤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동 ****호	폐문부재
74	대성초1지구	양동	61-38	토지소유자	모*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폐문부재
75	대성초1지구	양동	61-23 외 5필지	토지소유자	******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	수취인불명
76	대성초1지구	양동	67-10	토지소유자	문*백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 **동 ****호	폐문부재
77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3	토지소유자	문*연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 *-*	폐문부재
78	대성초1지구	양동	140-11	토지소유자	문*숙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79	대성초1지구	양동	140-2	토지소유자	문*숙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자라길 **	폐문부재
80	대성초1지구	양동	141-27	토지소유자	문*시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로 **-**	폐문부재
81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65	토지소유자	민*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 **-**, ***호	폐문부재
82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3-7	토지소유자	민*순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 **	폐문부재
83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4	토지소유자	박*석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번길 **, ***호	수취인불명
84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30	토지소유자	박*두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85	대성초1지구	양동	45-1	토지소유자	박*숙	전라남도 목포시 난영길**번길 *-*	폐문부재
86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91	토지소유자	박*희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 ***동 ****호	폐문부재
87	대성초1지구	양동	141-28	토지소유자	박*주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88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5-36	토지소유자	박*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89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10 외 1필지	토지소유자	박*재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폐문부재
90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1	토지소유자	박*주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 **	폐문부재
91	대성초1지구	양동	67-12	토지소유자	박*례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 ***동 ***호	폐문부재
92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4-186 외 5필지	토지소유자	박*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동 ****호	수취인불명
93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5-26	토지소유자	박*자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	폐문부재
94	대성초1지구	양동	62-3	토지소유자	박*덕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95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39	토지소유자	박*심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96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12	토지소유자	박*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	폐문부재
97	대성초1지구	대성동	127-114 외 1필지	토지소유자	박*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길 **, ***동 ****호	폐문부재
98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69 외 1필지	토지소유자	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동 ****호	폐문부재
99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8	토지소유자	배*삼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100	대성초1지구	대성동	127-41	토지소유자	배*학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	폐문부재
101	대성초1지구	양동	67-4	토지소유자	배*자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 ***호	폐문부재
102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96	토지소유자	서*추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 ****호	폐문부재
103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19	토지소유자	서*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청수*길 **-**	폐문부재
104	대성초1지구	대성동	125-16	토지소유자	서*철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번길 **	폐문부재
105	대성초1지구	양동	70-10 외 2필지	토지소유자	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로 **, ***동 ****호	폐문부재
106	대성초1지구	양동	143-8	토지소유자	서*자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안길 *-*	폐문부재
107	대성초1지구	양동	141-20	토지소유자	서*순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 *-*	폐문부재
108	대성초1지구	양동	42-56	토지소유자	서*헌	전라남도 목포시 난영길 *-*	폐문부재
109	대성초1지구	양동	24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석*화	전라남도 목포시 죽산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110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52	토지소유자	손*숙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부양지*길 **	폐문부재
111	대성초1지구	양동	63-1	토지소유자	손*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 ***동 ***호	폐문부재
112	대성초1지구	죽교동	79-22	토지소유자	손*진	,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113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11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손*석	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 ***-*	폐문부재
114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188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손*이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 **-*	폐문부재
115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12	토지소유자	송*대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116	대성초1지구	양동	141-12	토지소유자	신*진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수취인불명
117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5-41 외 2필지	토지소유자	신*자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	폐문부재
118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3-1	토지소유자	신*렬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 ***동 ***호	폐문부재
119	대성초1지구	양동	42-19	토지소유자	심*숙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	폐문부재
120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43 외 3필지	토지소유자	안*석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 ***동 ***호	폐문부재
121	대성초1지구	양동	61-30	토지소유자	안*금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회산길 **-*	수취인불명
122	대성초1지구	양동	61-40	토지소유자	양*애	,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안길 *,	폐문부재
123	대성초1지구	양동	67-17	토지소유자	양*정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124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50	토지소유자	양*성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 ***동 ***호	폐문부재
125	대성초1지구	양동	44-13	토지소유자	오*술	전라남도 목포시 난영길**번길 *	폐문부재
126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62	토지소유자	오*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 **, ***동 ***호	폐문부재
127	대성초1지구	양동	44-11	토지소유자	오*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 ***호	폐문부재
128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22	토지소유자	오*경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로 ***, *층	주소불명
129	대성초1지구	양동	43-14	토지소유자	우*숙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 ***동 ***호	폐문부재
130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 외 2필지	토지소유자	우***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길 **	폐문부재
131	대성초1지구	양동	46-4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유*호	전라남도 목포시 난영길**번길 *-*	폐문부재
132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17	토지소유자	유*례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133	대성초1지구	양동	43-7	토지소유자	유*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 ****동 ****호	폐문부재
134	대성초1지구	양동	140-11	토지소유자	유*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길 **, ***호	폐문부재
135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46	토지소유자	윤*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 ***동 ***호	폐문부재
136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67	토지소유자	윤*월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	폐문부재
137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5-22	토지소유자	윤*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길 *-*, ***호	폐문부재
138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08	토지소유자	윤*배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 **-*	폐문부재
139	대성초1지구	양동	67-14	토지소유자	윤*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번길 **-**	폐문부재
140	대성초1지구	양동	141-10	토지소유자	윤*성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길 *-*	폐문부재
141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71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이*수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142	대성초1지구	양동	70-25	토지소유자	이*심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143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23	토지소유자	이*식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144	대성초1지구	양동	45-9	토지소유자	이*수	전라남도 목포시 난영길 *-*	폐문부재

145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405	토지소유자	이*숙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	폐문부재
146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00	토지소유자	이*운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	폐문부재
147	대성초1지구	양동	31	토지소유자	이*태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번길 **-*	폐문부재
148	대성초1지구	양동	70-41	토지소유자	이*률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149	대성초1지구	양동	55-10	토지소유자	이*임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150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41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이*수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151	대성초1지구	양동	43-17	토지소유자	이*안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기점길 ***-**	이사불명
152	대성초1지구	양동	43-21	토지소유자	이*우	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번길 *-*	폐문부재
153	대성초1지구	양동	43-6	토지소유자	이*국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 ***동 ***호	폐문부재
154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82	토지소유자	이*순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 *-*	폐문부재
155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18	토지소유자	이*심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156	대성초1지구	양동	43-11	토지소유자	이*천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길**번길 *-*	폐문부재
157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71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이*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길 **, ****동 ****호	폐문부재
158	대성초1지구	양동	69-3	토지소유자	이*단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길**번길 *-*	폐문부재
159	대성초1지구	양동	46-5	토지소유자	이*선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번길 *	폐문부재
160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9	토지소유자	이*섭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폐문부재
161	대성초1지구	양동	44-10	토지소유자	이*아	전라남도 목포시 호정로 **-*	수취인불명
162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5-29	토지소유자	이*순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폐문부재
163	대성초1지구	양동	51	토지소유자	이*승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164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41	토지소유자	이*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 ***동 ****호	폐문부재
165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31	토지소유자	임*혜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166	대성초1지구	양동	2-14 외 4필지	토지소유자	임*모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	수취인불명
167	대성초1지구	양동	42-35	토지소유자	임*태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계중앙길 *	폐문부재
168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5-13	토지소유자	임*례	전라남도 목포시 해동마을길*번길 **	폐문부재
169	대성초1지구	양동	67-19	토지소유자	임*호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길 *-*	폐문부재
170	대성초1지구	양동	44-7	토지소유자	장*철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길**번길 *	폐문부재
171	대성초1지구	양동	42-36	토지소유자	장*선	전라남도 목포시 도룡길 *	폐문부재
172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34	토지소유자	장*태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거룡길 **-**	폐문부재
173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31	토지소유자	장*곤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174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03	토지소유자	전*수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175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83	토지소유자	전*정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천해길 **-*	폐문부재
176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29	토지소유자	전*순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번길 **-*	폐문부재
177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54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전*애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 ***동 ***호	폐문부재
178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61	토지소유자	정*임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	폐문부재
179	대성초1지구	양동	2-1	토지소유자	정*숙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주택로 **, ***동 ***호	폐문부재
180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56	토지소유자	정*순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 ***동 ***호	폐문부재
181	대성초1지구	양동	140-40	토지소유자	정*서	경기도 오산시 초평중앙로 **, ****동 ****호	폐문부재
182	대성초1지구	양동	141-24	토지소유자	정*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나길 **	폐문부재
183	대성초1지구	양동	70-68	토지소유자	정*봉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184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48	토지소유자	정*애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185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11	토지소유자	정*기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186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70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정*삼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187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5	토지소유자	정*혁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 ***동 ****호	폐문부재
188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10	토지소유자	정*옥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189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71 외 2필지	토지소유자	정*자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	폐문부재
190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5-14	토지소유자	조*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번길 **-**, ***호	폐문부재
191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155	토지소유자	조*금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번길 **-**, 가-***호	폐문부재
192	대성초1지구	양동	29	토지소유자	조*훈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안길 *-*	폐문부재
193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13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조*복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중촌길 **	폐문부재
194	대성초1지구	양동	2-10	토지소유자	조*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번길 **	폐문부재

195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194	토지소유자	주*영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번길 *-*	폐문부재
196	대성초1지구	양동	22-3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주*연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번길 **-*	폐문부재
197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72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주*주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 *동 ****호	폐문부재
198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44 외 3필지	토지소유자	지*복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199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57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지*	전라남도 목포시 허사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200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48	토지소유자	천*순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201	대성초1지구	대성동	127-41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천*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길 **, ***동 ****호	폐문부재
202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19	토지소유자	천*자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203	대성초1지구	죽교동	79-12	토지소유자	천*석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204	대성초1지구	양동	42-52	토지소유자	최*하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서호로 ***	폐문부재
205	대성초1지구	양동	55-7	토지소유자	최*진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번길 **	폐문부재
206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2-295	토지소유자	최*임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 **-*	폐문부재
207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45	토지소유자	최*현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 ***동 ****호	폐문부재
208	대성초1지구	양동	55-5	토지소유자	최*민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209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448	토지소유자	최*단	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번길 *	폐문부재
210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2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최*화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 ***동 ***호	폐문부재
211	대성초1지구	대성동	125-14	토지소유자	최*순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	폐문부재
212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13	토지소유자	최*화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 ***동 ****호	폐문부재
213	대성초1지구	양동	69-5	토지소유자	최*기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길**번길 *	폐문부재
214	대성초1지구	양동	70-32	토지소유자	최*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장도길 **-**	수취인불명
215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17	토지소유자	허*옥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216	대성초1지구	양동	139-3	토지소유자	허*희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번길 *-*	폐문부재
217	대성초1지구	양동	42-31	토지소유자	허*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 ***동 ****호	폐문부재
218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37	토지소유자	허*애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동 ***호	폐문부재
219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3-18	토지소유자	홍*애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번길 *	폐문부재
220	대성초1지구	양동	70-16 외 1필지	토지소유자	홍*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 ***호	폐문부재
221	대성초1지구	양동	2-9 외 9필지	토지소유자	고*주		미발송(주소불명)
222	대성초1지구	양동	2-9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김*현		미발송(주소불명)
223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60	토지소유자	김*례		미발송(주소불명)
224	대성초1지구	양동	2-14	토지소유자	김*규		미발송(주소불명)
225	대성초1지구	양동	2-9 외 9필지	토지소유자	김*도		미발송(주소불명)
226	대성초1지구	죽교동	79-60	토지소유자	김*선		미발송(주소불명)
227	대성초1지구	양동	140-7 외 1필지	토지소유자	김*순		미발송(주소불명)
228	대성초1지구	양동	39-30	토지소유자	김*하		미발송(주소불명)
229	대성초1지구	양동	43-20	토지소유자	김*진		미발송(주소불명)
230	대성초1지구	양동	141-33	토지소유자	김*문		미발송(주소불명)
231	대성초1지구	양동	39-13	토지소유자	김*채		미발송(주소불명)
232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5-22	토지소유자	김*운		미발송(주소불명)
233	대성초1지구	양동	2-9 외 9필지	토지소유자	김*례		미발송(주소불명)
234	대성초1지구	양동	42-29	토지소유자	문*식		미발송(주소불명)
235	대성초1지구	양동	43-13	토지소유자	박*두		미발송(주소불명)
236	대성초1지구	양동	2-9 외 9필지	토지소유자	배*진		미발송(주소불명)
237	대성초1지구	양동	2-2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서*원		미발송(주소불명)
238	대성초1지구	양동	2-14 외7필지	토지소유자	서*례		미발송(주소불명)
239	대성초1지구	양동	7-5 외 3필지	토지소유자	서*례		미발송(주소불명)
240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4-186 외 5필지	토지소유자	소*영		미발송(주소불명)

241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60	토지소유자	신*일		미발송(주소불명)
242	대성초1지구	양동	7-1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오*곤		미발송(주소불명)
243	대성초1지구	양동	39-10	토지소유자	윤*병		미발송(주소불명)
244	대성초1지구	양동	2-14 외 3필지	토지소유자	이*권		미발송(주소불명)
245	대성초1지구	양동	64-4	토지소유자	이*주		미발송(주소불명)
246	대성초1지구	양동	43-29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이*선		미발송(주소불명)
247	대성초1지구	양동	3-2	토지소유자	이*수		미발송(주소불명)
248	대성초1지구	양동	6-1	토지소유자	이*명		미발송(주소불명)
249	대성초1지구	양동	42-45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임*술		미발송(주소불명)
250	대성초1지구	양동	2-9 외 6필지	토지소유자	장*주		미발송(주소불명)
251	대성초1지구	양동	42-26 외 2필지	토지소유자	장*진		미발송(주소불명)
252	대성초1지구	양동	2-9 외 9필지	토지소유자	전*훈		미발송(주소불명)
253	대성초1지구	양동	2-9 외 6필지	토지소유자	정*자		미발송(주소불명)
254	대성초1지구	양동	7-18 외 1필지	토지소유자	정*규		미발송(주소불명)
255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24	토지소유자	제*효순		미발송(주소불명)
256	대성초1지구	양동	2-9 외 8필지	토지소유자	조*덕		미발송(주소불명)
257	대성초1지구	양동	2-9 외 9필지	토지소유자	주*례		미발송(주소불명)
258	대성초1지구	대성동	214-35	토지소유자	주*일		미발송(주소불명)
259	대성초1지구	죽교동	0	토지소유자	****은행		미발송(주소불명)
260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193	토지소유자	진*은		미발송(주소불명)
261	대성초1지구	양동	143-6	토지소유자	최*규		미발송(주소불명)
262	대성초1지구	양동	141-6	토지소유자	최*석		미발송(주소불명)
263	대성초1지구	양동	47-4	토지소유자	최*순		미발송(주소불명)
264	대성초1지구	양동	69-4 외 20필지	토지소유자	하*순		미발송(주소불명)
265	대성초1지구	양동	2-11 외 2필지	토지소유자	한*원		미발송(주소불명)
266	대성초1지구	양동	2-17	토지소유자	홍*옥		미발송(주소불명)
267	대성초1지구	양동	67-6	이해관계인	김*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의길 **-*	주소불명
268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81	이해관계인	나*태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번길 *, ***동 ***호	폐문부재
269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4-28	이해관계인	목***협동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번길 **	수취인불명
270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423 외 2필지	이해관계인	문*순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원산안길 **	폐문부재
271	대성초1지구	양동	3-1	이해관계인	박*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 ***동 ***호	폐문부재
272	대성초1지구	양동	3-1	이해관계인	박*희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 *동 ***호	폐문부재
273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34	이해관계인	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 *층, ***호	수취인불명
274	대성초1지구	죽교동	573-245	이해관계인	이*용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	폐문부재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인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 시	종전 토지					확정예정 토지					증감 면적 (㎡)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의견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0조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의견서작성	➔	접수	➔	검토	➔	경계(면적) 조정	➔	임시경계점표지설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처리기관 : 목 포 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